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2년 전망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 3

- | | |
|---|------------------------|
| 3 | 1. 신흥 경제국가의 수입규제 조치 확대 |
| 6 | 2. 신흥국 비관세장벽 강화 |

Ⅱ.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 7

- | | |
|----|-------------------|
| 7 | 1. 對韓 수입규제 동향 |
| 7 | 가. 총괄 |
| 11 | 나.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 48 | 2. 對韓 수입규제 전망 |
| 48 | 가. 총괄 |
| 49 | 나.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

첨부. 국별/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 84

요 약

I.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 전반적인 무역규제 장벽은 큰 변화 없어

- '11년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무역규제조치는 완화된 모습을 보임
- '11년 1~6월간 세계적으로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는 69건을 기록, 전년 동기와 같은 건수를 기록
- 세이프가드 발동은 1~10월간 9건으로 전년보다 1건 감소하였고 상계관세는 1~6월 간 8건을 기록하여 전년보다 3건 늘어남
- 전반적인 무역규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 경기침체 속에 신흥국가 무역규제 비중 확대

- 2011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적용 횟수는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음
- 하지만 세계경제에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히 신흥경제국가의 무역규제조치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상반기 조사가 시작된 반덤핑 관세의 79%가 신흥 경제국의 건수

□ 신흥시장 경제성장과 수입확대로 보호주의 조치 증가

- 브라질과 같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경제국가는 경제성장과 국내수요 증가로 수입이 증가
- 수입증가와 더불어 산업계의 보호요청이 강해짐에 따라 자국산 의무구매조치,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

II.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 기존 수입규제 조치 종료로 對韓 전체적인 건수는 감소

- '11.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 으로부터 총 1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조사 중인 건수 포함)
 - 전체적인 수입규제 건수는 전년 126건 대비 9건이 감소함
- 전체 규제의 82%인 96건이 신흥 경제국가의 규제로 나타남
- 117건 중 규제 중인 건은 97건이며 조사 중(최종판정 이전 모두 포함)은 20건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88건, 세이프가드 25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임

□ 인도, 중국이 최대 규제국가

- 국가별로는 인도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7건, 미국 13건, 터키가 12건, 파키스탄 7건, 인도네시아 5건, 우크라이나가 4건 순

□ 화학제품 규제가 가장 심해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 및 금속 33건, 섬유 19건, 기타 23건
 - 화학제품은 인도(16건), 중국(14건)이, 철강 및 금속은 미국(8건)이, 섬유는 터키(6건), 인도(4건)가 주요 규제국가

□ 신규 피소 역시 신흥 경제국이 주도

- '11년 신규 수입규제 피소건수는 16건으로, 신흥 경제국으로부터 13건, 선진국으로부터 3건 피소 당함

I.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1. 신흥 경제국가의 수입규제 조치 확대

□ 전반적인 무역규제 장벽은 큰 변화 없어

- '11년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무역규제조치는 완화된 모습을 보임
- '11년 1~6월간 세계적으로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는 69건을 기록, 전년 동기와 같은 건수를 기록
- 세이프가드 발동은 1~10월간 9건으로 전년보다 1건 감소하였고 상계관세는 1~6월 간 8건을 기록하여 전년보다 3건 늘어남
- 전반적인 무역규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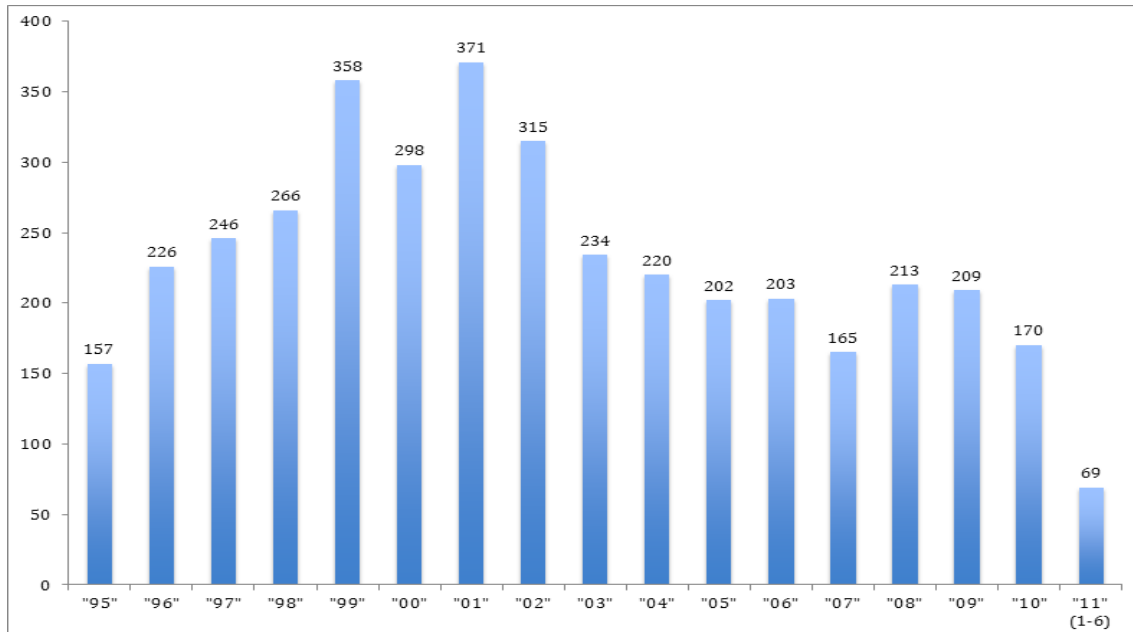
□ 경기침체 속에 신흥국가 무역규제 비중 확대

- 2011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적용 횟수는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음
- 하지만 세계경제에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히 신흥경제국가의 무역규제조치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상반기 조사가 시작된 반덤핑 관세조사의 69건 중인 49건이 79%가 신흥 경제국발 제소, 전년도의 45건 65%보다 증가

□ 반덤핑 규제

- 2011년 1~6월 중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는 69건을 기록 (전년과 동일)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95 ~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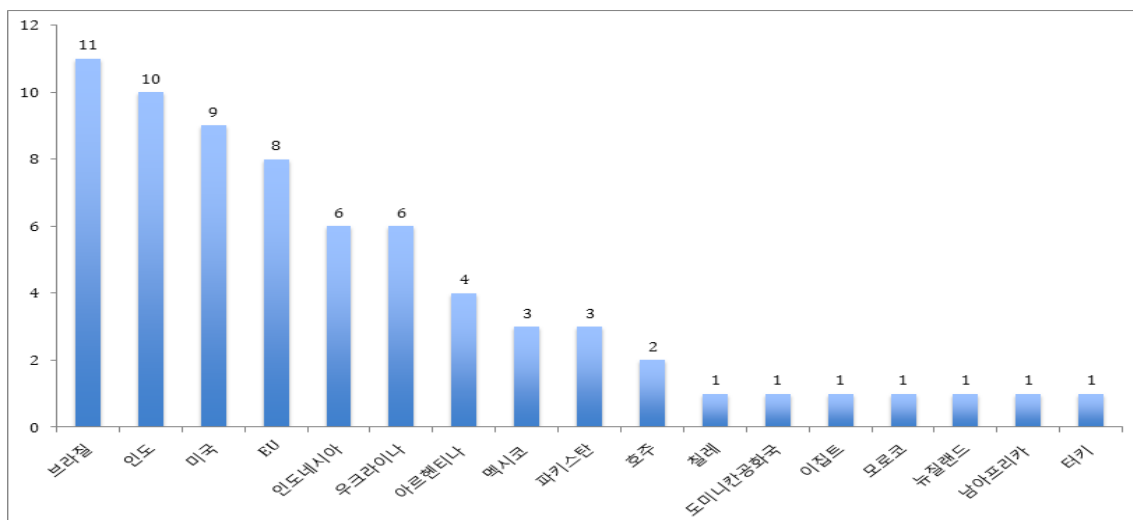


자료 : WTO

○ 주요 제소국은 브라질, 인도, 미국, EC,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 상반기 반덤핑 조사개시 69건 중 71%인 49건이 개도국발 조사임

<주요 반덤핑 조사개시 국가 및 개시건수 ('11.1 ~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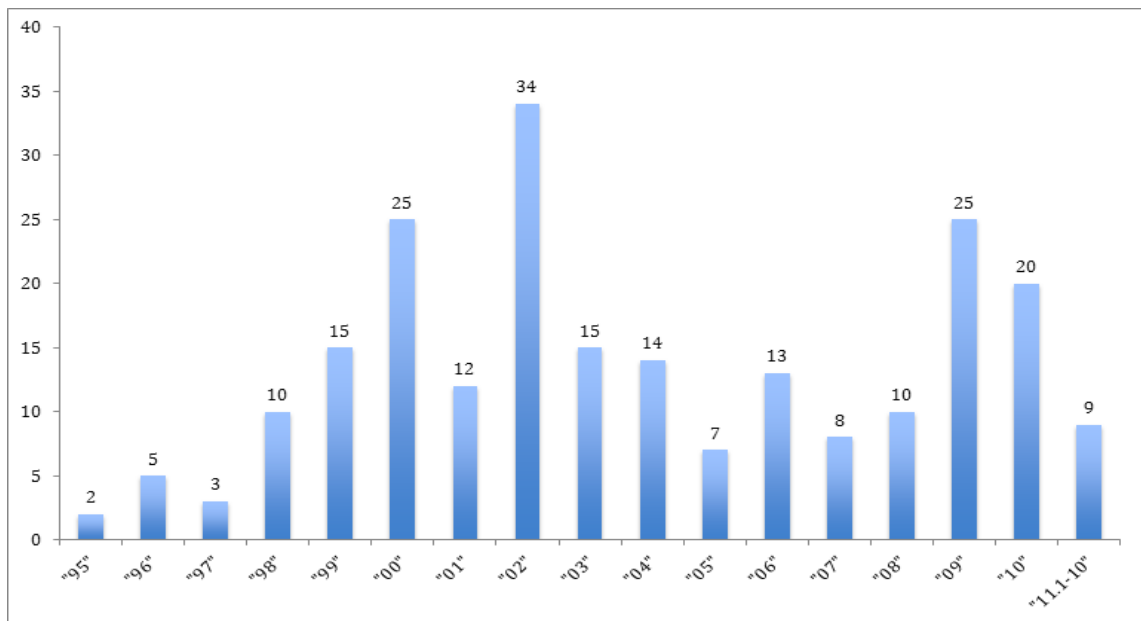


자료 : WTO

□ 세이프가드 규제

- '11년 1~10월 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9건으로, '2010년 연간 20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추이 ('95 ~ '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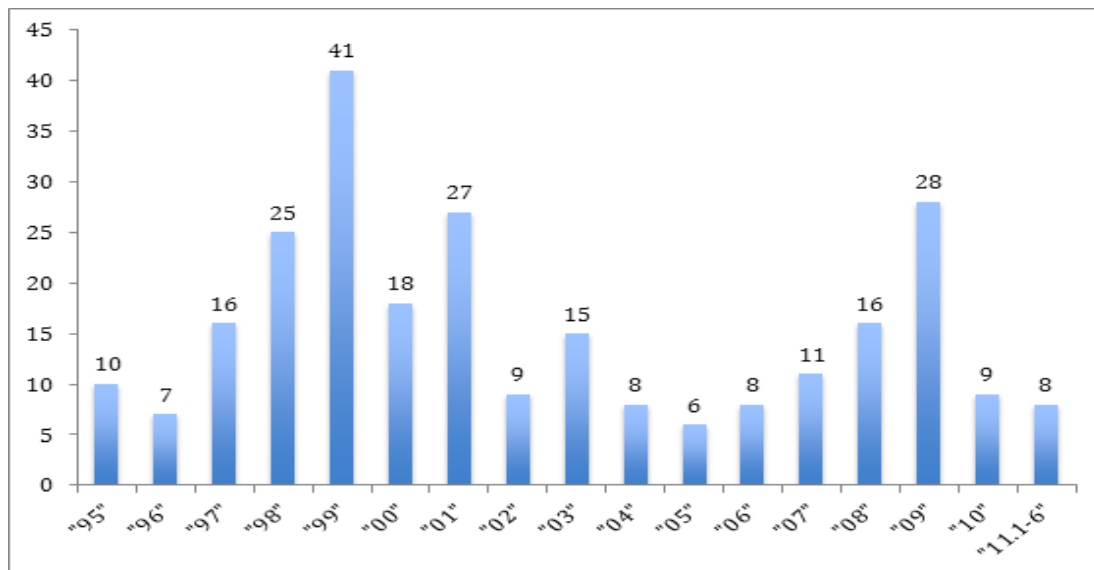
자료 : WTO

- 2011년 주요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국가는 인도네시아(4건), 우크라이나(2건), 인도(1건), 이스라엘(1건), 말레이시아(1건), 터키(1건) 등임

□ 상계관세

- '11.1~6월 중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은 8건으로, 전년 9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세계 상계관세 조사개시 추이 ('95 ~ '11.6)>



자료 : WTO

2. 신흥국 비관세장벽 강화

□ 경제성장, 통화 강세, 수입확대로 보호주의 조치 증가

- 브라질과 같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경제국가는 경제성장과 국내수요 증가로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모습
- 수입증가와 더불어 산업계의 보호요청이 강해짐에 따라 자국산 의무구매조치,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
- 2011년 1~9월간 브라질의 수입은 전년대비 26.3% 증가하였는데 브라질 정부는 반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제품에 대한 관세 소급적용을 2011년 9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
- 아르헨티나는 2011년 공식적으로 집계된 무역보호조치가 121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비관세 장벽을 운영
- 인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태양광 제품에 대해 국내산 의무 구매조치 실시, 철강제품의 품질보증마크 획득을 의무화 등 비관세조치 강화

II.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1. 對韓 수입규제 동향

가. 총괄

□ 기존 수입규제 조치 종료로 對韓 전체적인 건수는 감소

○ '11.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 으로부터 총 1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조사 중인 건수 포함)

- 전체적인 수입규제 건수는 전년 126건 대비 9건이 감소함

< 2011년 대한 수입규제 종료 건수 >

국가	품목 명	품목분류	유형	최종판정일
아르헨티나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지와 판지	기타	반덤핑종료	'11.12.1
아르헨티나	에어컨	전기전자	반덤핑종료	'11.07.18
우크라이나	냉장/냉동고	전기전자	세이프가드	'11.4.7
인도	스테인리스 열연강	철강	반덤핑종료	'11.10.11
인도	폴리프로필렌	화학	반덤핑종료	'11.5.25
인도	pvc 페이스트	화학	반덤핑종료	'11.5.2
인도네시아	비코팅인쇄용지	기타	반덤핑종료	'11.2.1
중국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철강	반덤핑종료	'11.4.8
중국	핵산	화학	반덤핑종료	'11.5.12

○ 전체 규제의 82%인 96건이 신흥 경제국가의 규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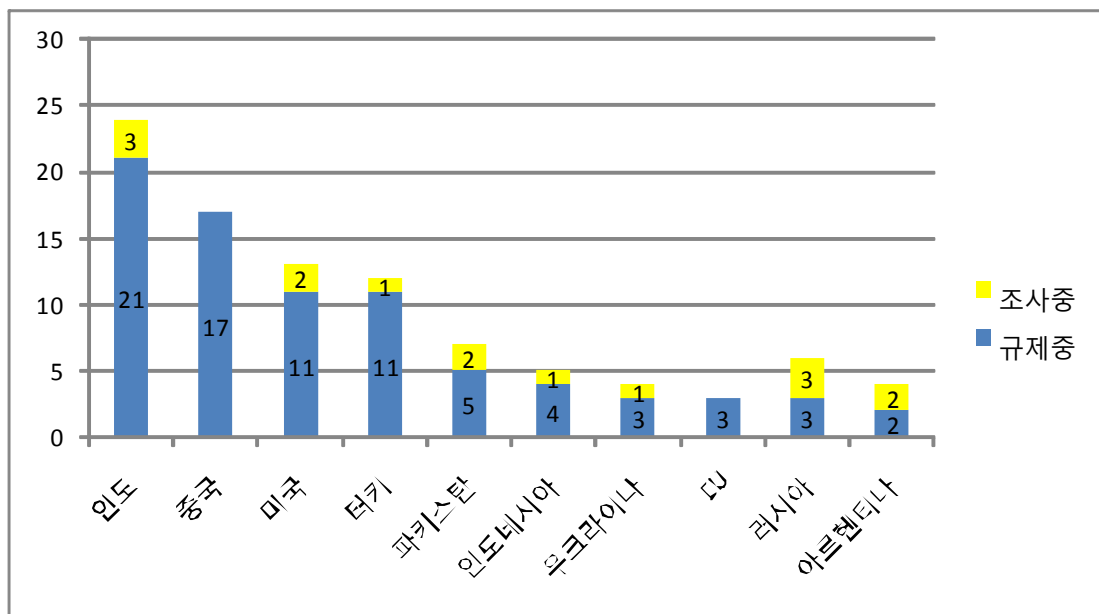
○ 117건 중 규제 중인 건은 97건이며 조사 중(최종판정 이전 모두 포함)은 20건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88건, 세이프가드 25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임

□ 인도, 중국이 최대 규제국가

- 국가별로는 인도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7건, 미국 13건, 터키가 12건, 파키스탄 7건, 인도네시아 5건, 우크라이나가 4건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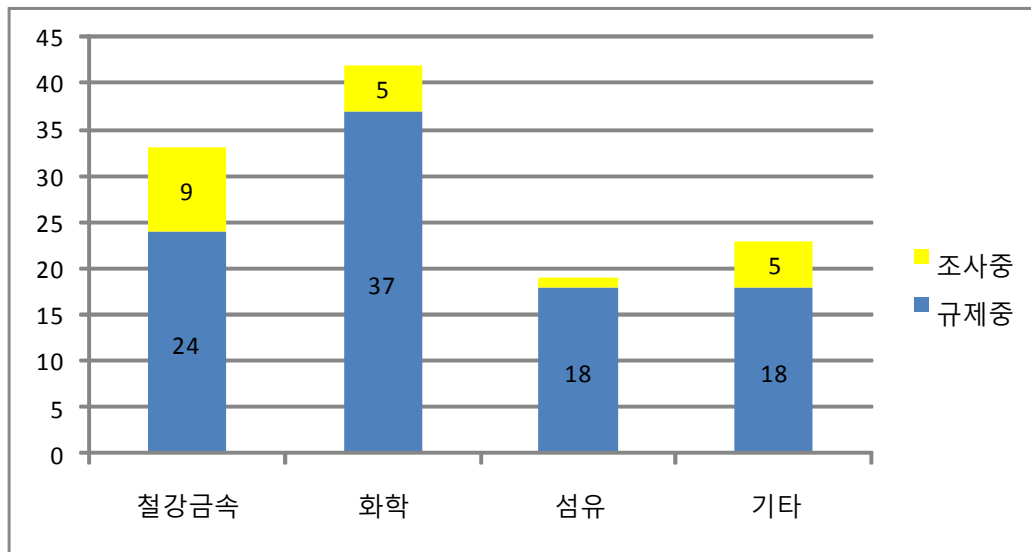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화학제품 규제가 가장 심해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 및 금속 33건, 섬유 19건, 기타 23건
- 화학제품은 인도(16건), 중국(14건)이, 철강 및 금속은 미국(8건)이, 섬유는 터키(6건), 인도(4건)가 주요 규제국가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신규 피소 역시 신흥 경제국이 주도

- '11년 신규 수입규제 피소건수는 16건으로, 신흥 경제국으로부터 13건, 선진국으로부터 3건 피소 당함

<연도/ 국가 유형별 신규 피소 건수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규피소	28	15	11	11	15	23	17	16
선진국發	10	3	4	3	2	1	0	3
신흥국發 (비중)	18 64.3%	12 80.0%	7 63.6%	8 72.7%	13 86.7%	22 95.7%	17 100%	13 81.2%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7건, 화학 4건, 기타 5건 등임
- 제소국은 11개국으로 인도와 태국이 각각 3건, 미국이 2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파키스탄, 남아공이 각각 1건임

<2011년 신규 피소 현황>

	국가	피소품목	조사개시	유형	비고
1	호주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11.9.19	반덤핑	조사 중
2	러시아	스테인레스관	11.8.31	세이프가드	조사 중
3	미국	냉장고	11.4.26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중
4	미국	유압식 변압기	11.7.14	반덤핑	조사 중
5	태국	코팅지	11.7.8	반덤핑	조사 중
6	태국	도색 아연도금강판	11.7.8	반덤핑	조사 중
7	태국	아연도금강판	11.7.8	반덤핑	조사 중
8	우크라이나	승용차	11.7.2	세이프가드	조사 중
9	인도네시아	냉연코일	11.6.24	반덤핑	조사 중
10	터키	면사	11.6.11	세이프가드	조사 중
11	인도	무스프탈산	11.4.29	반덤핑	조사 중
12	인도	무스프탈산	11.8.10	세이프가드	조사 중
13	인도	Carbon Black	11.12.2	세이프가드	조사 중
14	브라질	도금강판	11.4.18	반덤핑	조사 중
15	파키스탄	포름산	11.2.23	반덤핑	조사 중
16	남아공	스테인레스관	11.8.31	세이프가드	조사 중

나.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남아프리카 공화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남아공으로부터 3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화학, 철강, 제지 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폴리에틸렌 수지용기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 (Excluding liquids and pastes)	3907.60	반덤핑	'10.7.23 (일몰제)	'11.3.04	화학	- 반덤핑관세율 : 19.7%
2	백상지 (Greyback Paperboard)	4810.92	반덤핑	'05.8.5	'11.6.15	제지	- 반덤핑관세율 : 2.4% 또는 23% - 대상업체: 한솔제지 2.4%, 한솔제지를 제외한 업체 23%
3	연선, 로프, 케이블 (Standard wire ropes cables, plaited bands, slings)	7312.10	반덤핑	'07.8 (일몰제)	'09.2.19	철강 및 금속	- 반덤핑 관세율 : 79.76% 또는 50.33% - 로프, 케이블의 지름이 8mm 이상인 제품은 79.76%, 이하 제품은 50.33%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 (ITAC), 남아공 국세청 (SARS)

[러시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1건의 반덤핑 규제와 2건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고 있으며 3건의 세이프가드가 적용 중에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니켈함유 테인레스 평판압연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ntaining nickel)	721911, 721921, 721922, 721923, 721924, 721931, 721932 등	반덤핑	'09.3.27	'10.12.16	철강 및 금속	--10년 11월 12일 반덤핑 관세 부과 ('10.12.26~'13.12.25) - 한국 : 포스코 4.8%, 대명 TMS Co., LTD 및 태한 SD CO., Ltd 를 포함한 기타 생산자 62.8%.
2	스테인레스 강관 (Stainless pipes)	730411, 730441 730449, 730611 730640	세이프 가드	'07.12.13	'09.11.1 (3년간)	철강 및 금속	○일부 철강제품 수입관세를 9개월 동안 5%에서 15% ~20%로 인상. ○비철금속 스테인리스 파이프 29개 종류에 28.1% 특별수입관세를 추가로 도입
3	잠금장치 및 부속구 (Fasteners and fittings), 볼트, 너트, 스프링(metal bolts, nuts, springs)	731815 /16/21	세이프 가드	'09.5.14	'10.5.24	철강 및 금속	○자동차 Fastener를 제외하고 3년간 11.6% (톤당 282.4달러 이상) 수입세 부과 ○ 11. 2.12: 최종판정
4	스테인레스 식기류 (Tableware of Stainless Steel), 철재주방용품(Flatware from Corrosion-proof Steel)	8211 91 300 0 8215 99 100 0 8215 20 100 0	세이프 가드	'08.04.04	'09.11.23	철강 및 금속	○1kg 당 USD 1.4로 책정, 2009년 12월 27일부터 실시 ○수입 관세는 벨로루시 및 중국을 제외(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한 개도국 산 강철 식기류에는 미적용.
5	유리섬유 (Fiberglass)	7019 19/31/32/ 39/40/51/ 52/59/ 90	세이프 가드	06.10.21	'07.11.01	섬유	○유리섬유에 대해 3년간 특별 관세를 도입, 2010년 12월 10일까지 중국, 한국, 홍콩 등 개발도상국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연마재용 유리섬유는 14.2%의 특별 관세를, 그 이외의 유리섬유의 경우 33.4%의 특별 관세 부과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스테인레스 관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 1건 시행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품목	비고
스테인레스관 (corrosion-resistant pipes)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730411, 730449, 730640	730441, 730611,	세이프가드(조사중)	'11.8.31	철강 및 금속	○11.08.31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말레이시아]

□ 한국제품 수입규제 세부사항

- 2011년 9월 2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신문용지를 수입할 때 적용하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에 실시한 재조사를 통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 반덤핑 조치가 완화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덤핑의 재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2008년 9월 22일 정부는 말레이시아 신문용지 생산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관세청(RMC)는 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며, 정부가 최종 승인된 행정검토 결과를 관보 통지한 날부터 5년간 유효
-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로부터 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4801.00.100	반덤핑(규제중)	'03.1.16.	'09.3.20.	신문용지	○ 관세율: 43.24%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인도 조치 CIF 적용) ○ 2014. 3. 18까지 적용

자료원: Customs (Anti-Dumping Duties) Order 2009

□ 2011년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변화

- 한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수입에 부과(17.09%) 되었던 반덤핑 규제가 2011년 4월 21일부로 종료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1년 8월 22일 자 관보를 통해 열연코일(HRC)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통지
 - 시장점유율, 판매량, 생산 과정, 생산성, 이용을 통한 이득과 손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 HRC 증가가 경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계에 타격을 끼친 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멕시코]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로우멜티드 제외)	5503.2001 5503.2002 5503.2003 5503.2099	반덤핑	'92.3.19	2009.11 (일몰제임)	섬유	○ 관세율 -삼양사 제조, 수출 시 3.74%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 시 14.81%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 시 4.49% -기타 32% ○ 참고: 일반관세 9%

□ 참고사항

- 주재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아니지만 주재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사례
 - POSCO는 2009년부터 멕시코에서 자동차 및 가전용 강판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브라질의 멕시코산 도금강판에 대한 AD제소(2010년 말)로 인해 대브라질 수출에 위협을 받고 있음. POSCO는 급증하는 멕시코 내 자

동차용 강판 수요와 브라질 시장 확대를 위해 Altamira에 도금강판 No.2 라인 공장을 착공 중에 있음. 현재 브라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재용 철강이나 POSCO는 자동차용 강판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 미국 상무부는 2011년 3월 30일, 월풀 사의 삼성, 엘지, 대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제소 요청과 관련, 대우를 제외한 삼성과 엘지에 10월 27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음. 이번 판정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삼성, 엘지 냉장고가 포함되었으며 멕시코산 삼성 냉장고의 덤핑율은 36.65%, 엘지 냉장고는 16.44%로 판정

[미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11.12월 현재 수입규제 건수는 11건임 (규제 중 10건, 조사 중 2건)

- 품목별로는 철강 8건, 화학 1건, 섬유 1건, 기계 1건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8건, 반덤핑/상계관세 3건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스테인리스 강판	7306.30	반덤핑	'91.10.4	'11.12.07	철강	○10.6.21일부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세아제강 3.28%, 동부제강 3.28%, 한국철강 3.28%, 유니온스틸 3.28%, 넥스틸 3.28%, 아주베스틸 3.28 ○11.10.28일부로 반덤핑 긴급일몰재심 최종판정결과 공고 - 현대강관 : 6.86% - 한국강관 : 6.21% - 부산파이프 : 4.91% - 마산강관 : 11.63% - 기타 : 6.37% ○11.12.07일부로 반덤핑 예비판정 공고 - 세아제강 2.31% - 현대 하이스코 0.59%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2	스테인리스 용접강판	7306.40	반덤핑	'91.11.1	'92.12.30	철강	○10.1.7일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세아제강 5.15%, 기타 7.0% ○11.11.02일부로 반덤핑 긴급일몰제심에 대한 최종판정 공고함 - 삼미금속 : 7.92% - 세아제강 : 2.67% - 기타 : 7.00%
3	철강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7210, 7212, 7215, 7217류	반덤핑/상계관세	'92.7.20	'11.3.32	철강	○10.3.22일부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현대하이스코 3.29%, 포스코 0.01%/미소마진, 유니온스틸 14.01%, LG화학, 해원엠에스씨, 동부제강 8.65% ○10.9.14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 반덤핑관세 : 현대하이스코 0.22%/미소마진, 포스코 0.04%/미소마진, 유니온스틸 2.27%, 동부스틸 3.89%, LG화학, 해원엠에스씨, LG하우시스, 동국 3.08% - 상계관세 : 현대하이스코 0.07% 미소마진 ○11.08.31일부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공고 - 현대하이스코 0.11% 미소마진 판정
4	스테인리스 선재	722100.05, 15, 30, 45, 75	반덤핑	'97.8.26	'10.6.17	철강	○09.7.1일자로 반덤핑 일몰제심 개시 공고(상무부) ○10.6.17일자로 반덤핑 규제 지속 결정 공고
5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	7219.13/14/ 31/32/33/ 34/35/90, 7220.12/ 20/90	반덤핑/상계관세	'98.6.30	'11.11.16	철강	○10.9.7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제심 개시 ○10.6.2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현대제철 0.54%, 대양금속 0.67%, 대한 4.64%, 기타 0.63% ○10.11.2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 포스코 6.08%, 대한 58.79%, 대양금속 5.44%, 기타 6.08% ○11.08.30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일몰제심 최종판정 공고 ○반덤핑 부분철회판정(포스코 : 2.49% → 0%(철회)), 지속(대한 : 58.79% → 58.79%, 기타 : 2.49% → 19.60%)-제로잉 사용에 대한 WTO 판정 이행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6	철강후판	7208.40/51/ 52/53/90 , 7210.70/90, 7211.13/14/ 90, 7212.40/50, 7225.40/50/99, 7226.91	반덤핑/ 상계관 세	'99.3.16	'09.4.29	철강	○10.3.5일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효성, 현대미포조선 정우산기 32.7% ○10.11.1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시행 ○11.03.07일부로 반덤핑 긴급 일몰 재심에 대한 최종판정 공고 - 동국제강 2.98%, 기타 2.98% ○11.03.08일부로 상계관세 일몰 재심에 대한 최종판정 공고 - 동국제강 1.38%, 기타 1.38% ○11.12.05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일몰재심 최종판정 공고
7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PSF)	5503.2	반덤핑	'99.4.30	'11.9.30	섬유	○06.4.3일부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모든 한국기업 7.9% ○08.12.5일부 연례재심 최종판정 - 휴비스 2.92% ○10.10.19일부 연례재심 최종판정 - 휴비스 0.94% ○11.09.30일부로 반덤핑 지속판정 공고
8	폴리염화비닐 (PVA)	3905.30	반덤핑	'02.9.26	'08.10.3	화학	○동양제철화학 38.74%, 기타 32.08% ○09.4.13일부로 일몰재심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9	PC강선	7312.10.1 099	반덤핑	'03.2.27	'04.1.28	철강	○고려제강·동일철강 54.19%, 기타 35.64% ○09.12.11일부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10	연벽사각 파이프	7306.61.5 0.00/ 7306.61.7 0.60	반덤핑	'07.6.28	'08.8.9	철강	○넥스틸 0.92%(미소마진), 동아/ 진방/ 유진 / 아신/ 한겨래/ 국제 30.66%, 세아 15.79%, 기타 15.79%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1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8202.39	반덤핑	'05.5.3	'11.10.28	기계	○이화 다이아몬드 12.76%, 신한 다이아몬드 26.55%, 효성 다이아몬드 6.43%, 기타 16.39% ○10.03.24일부로 반덤핑 부과 최종판정 정정 - 이화다이아몬드 8.80%, 신한다이아몬드 16.88%, 효성다이아몬드 6.43%, 기타 업체 11.10% ○'11.12.6일부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공고 - 이화 다이아몬드 12.21%, 효성 다이아몬드 12.19%, 신한 다이아몬드 3.50%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한국산 PET 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반덤핑 철회판정

- 미 무역위원회는 11.08.15일 한국산 PET 필름의 반덤핑 규제 철회가 미국 내 산업피해를 재발하거나 지속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덤핑 철회판정을 발표
- 미 상무부는 11.09.16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고 공고
- 금번 판결은 10.10.20일부터 수출된 제품의 관세에 소급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호남석유화학, 효성 등의 국내 화학기업이 특별한 모니터링 절차 없이 미국에 PET 필름을 수출할 수 있게 됨
- PET 필름은 포장용, 전기전자용, 산업용, 그래픽용 등에 사용되며 최근 디스플레이 용도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한국산 금속제 주방용품(Top of the 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철회

- 미 상무부는 10.12.29일부 관보를 통해 한국산 금속제 주방용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을 내림

- 일몰재심 개시 이후, 미국 이해관계자들의 응답이 없어 반덤핑은 '10.11.17, 상계관세는 '10.11.22 부로 관세부와 철회를 공고
- 동 제품은 1986년 이후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받아오고 있었으며 지난 '10.10.01에 제 3차 일몰재심을 개시한 바 있음
-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3회 연속 무혐의를 받는 기업을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내림

○ 한국산 스테인레스 강관이음쇠(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반덤핑 부과 철회 판정

- 미 상무부는 10.11.05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산 스테인레스 강관이음쇠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을 내림
- 일몰재심 개시 이후, 미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응답이 없어 상무부는 '10.11.01 부로 반덤핑 관세부와 철회를 공고
- 동 제품은 1992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아오고 있었으며 지난 '10.09.01에 일몰재심을 개시한 바 있음

○ 스테인리스 열연 후판코일에 관한 반덤핑 규제 1건 종료

○ 미 무역위원회,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예비판정

-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미국 월풀(Whirlpool)사는 2011.3.30일 미 정부에 한국산 냉동실이 밑에 있는 방식(일명 프렌치 형) 냉장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
- 월풀은 지난해 미국에서 인기있는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 시장 점유율이 8.5%에 그쳐, 삼성(39.6%)과 엘지(19.1%)에 비해 크게 뒤졌음
- 2011.8.30 미 상무부는 한국산 프렌치 형 냉장고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만큼의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미 월풀사의 상계관세 요청을 기각
- 그러나 2011.10.30일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덤핑혐의를 인정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멕시코산 36.65%, 한국산 32.2%, LG전자에 대해 멕시코산 16.44%, 한국산 4.09% 덤핑판정 내려짐

- 미 상무부의 최종판결은 2012.3월 내려질 예정이며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 시 예비판정된 관세율 적용되어 삼성과 LG전자 수출에 피해가 예상되지만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판정될 경우 관세 돌려받을 수 있어 최종결과에 이목 집중

○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미국 반덤핑관세 부과 최대 대상국은 중국이며 한국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2011년 현재까지 14개 품목이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음. 최근 미국 유입식 변압기 제조업체인 ABB, Delta Star, Pennsylvania Transformer Technologies이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가 미국 변압기 제조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제소 함
- 이에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1.9.2. 반덤핑피해 판정을 내렸고 미국 상무부는 2012.2.9로 예비판정을 연기한 상황임

< 미국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 중인 품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품목	비고
냉장고	8418.10/21/99.40/99.80	반덤핑/상계 조치 조사중	'11.4.26	기계	○ 미국 상무부(DOC)는, 반덤핑 예비판정 공고(삼성 32.2%, 엘지 4.09%, 기타 18.15%)를 내림 ○ 국내대상업체로는 삼성, LG, 대우가 있음 ○ 조사 중에 있음
유입식 변압기	8504.23.00	반덤핑조사중	'11.7.14	기계	○ 미국상무부는 11.12.06 예비판정 연기함(12.02.09) ○ 국내대상업체로는 현대중공업, 효성이 있음 ○ 조사 중에 있음

[브라질]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1년 12월 7일 현재 반덤핑 조치가 적용 중인 품목은 PVC (HS Code 3904.10.10)와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제품(HS Code 4002.19.19) 두 품목으로 나타남

- PVC 의 경우 브라질 석유 화학 제품 분야 선두 기업인 Braskem사가 중국산 및 한국산 PVC를 덤핑 혐의로 제소함. 2007년 9월 21일 브라질 정부는 덤핑 혐의 조사 시작을 공식 발표하고 1년간의 조사 기간을 거쳐 2008년 8월 28일 최종 덤핑 판정을 내림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제품(SBR)의 경우 브라질 현지기업 Lanxess Elastômeros do Brasil가 한국산 SBR 제품을 덤핑 혐의로 제소함. 2010년 6월 1일 브라질 정부는 덤핑 혐의 조사 시작을 공식 발표하고 1년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2011년 6월 2일 관보를 통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림

<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PVC	3904.10.10	반덤핑	'07.9.21	'09.11.4	화학	○ '08.8.28 중국 및 한국산 PVC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적용 결정 - 2.7% : LG 화학 - 18.9% : 한화 화학을 제외한 여타 업체 ○종료일: 2013년 8월 29일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제품(SBR)	4002.19.19	반덤핑	10.6.1	11.6.2	화학	○2011년 6월 2일 한국산 SBR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적용 결정 ○관세 부과 현황 -LG 화학 :US\$ 43.41 -KKPC: US\$ 90.49 -여타업체:US\$ 683.84 ○종료일: 2016년 6월 2일

자료원: MDIC(통상개발산업부)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도금강판에 관한 반덤핑 조사 1건 시행

- 2011년 브라질 정부가 반덤핑 조사 개시를 한 품목은 도금강판(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품목임. 동 제품은 2010년 10월1월 브라질 현지기업 LCompanhia Siderurgica Nacional에 의해 덤핑 혐의로 제소되었으며 2011년 4월 18일에 조사개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음

< 브라질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 중인 품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품목	비고
도금강판	7210.30, 7210.49, 7210.61, 7210.70	반덤핑 (조사중)	'11.4.18	철강	○제조업체: Companhia Siderurgica Nacional ○피소국: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 호주 ○11.04.18 : 조사개시
강판	7208.51.00, 7208.52.00	반덤핑 (조사중)	'10.9.2.	철강	철강, 금속
NBR 합성고무	한국 HS 4002.59	반덤핑 (조사중)	'10.9.30	화학	화학

자료원: MDIC(통상개발산업부)

[아르헨티나]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아르헨티나는 12.3일 현재 중국산과 브라질산 품목 위주로 총 57건의 반덤핑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은 현재 2건이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음
- 2011.07.07일에 규제가 종료되어야 했을 냉연강판(HS CODE 7209.15.00, 7209.16.00, 7209.17.00, 7209.18.00, 7209.25.00, 7209.26.00, 7209.27.00, 7209.28.00, 7209.90.00, 7211.23.00, 7225.50.00, 7226.92.00)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는 SIDERAR S.A.I.C.사의 추가 피해 자료 제출 등의 명목으로 규제 종료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까지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냉연강판	7209.15.00, 7209.16.00, 7209.17.00, 7209.18.00, 7209.25.00, 7209.26.00, 7209.27.00,	반덤핑	'01.07.19 재검토: '10.07.05	반덤핑: '03.01.10, 재검토중	철강 및 금속	- 관세율 : 60.46% - 규제기간 : 조사종료 2011년 7월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조사 진행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7209.28.00, 7209.90.00, 7211.23.00, 7225.50.00, 7226.92.00					중으로 관세 부과
아연강판	7210.49.10, 7210.61.00, 7212.30.00, 7212.50.00, 7225.92.00, 7225.99.00, 7226.94.00, 7226.99.00	반덤핑	'02.05.30	반덤핑: '09.11.20	철강 및 금속	- 관세율 : 최소가를 규정함. 한국산 U\$ 243/톤 - 규제기간 : 연장('09.11.20 ~ '12.11.19)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0.12.15일 현지 인쇄용지 독점기업인 LEDESMA S.A.A.I.사의 의뢰로 미국, 한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지와 판지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

- 덤핑 조사 대상 품목 :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지와 판지(HS CODE 4810.14.00, 4810.19.10, 4810.13.89, 4810.13.90, 4810.19.89, 4810.19.90)
- 초기 조사 결과 대상 국가별 FOB기준 덤핑마진율은 미국(81.81%), 한국(47.49%), 핀란드(160.81), 오스트리아(152.73%), 중국(45.52%)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기간은 12.15일부터 3년간 진행, 그러나 최근 수출량이 미미하여 조사대향에서 제외 통보됨

○ 2010.02.16일 현지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공장협회(AFARTE, ASOCIACION DE FABRICAS ARGENTINAS TERMINALES DE ELECTRONICA)의 의뢰로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에어컨에 대한 덤핑 조사가 2011.07.18를 무혐의 판정과 함께 조사 종료됨

- 덤핑 조사 대상 품목 : 에어컨(HS CODE 8415.10.11, 8415.83.00, 8418.69.40)
- 대상 국가의 제품들이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제품의 가격에 당장의 가격 하락이나 상승을 줬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반덤핑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무혐의 판정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 종료됨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관련 종료된 품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	4810.14.00, 4810.19.10, 4810.13.89 등	반덤핑종료	'10.12.10	'11.12.1	기타	○11.12. 1 : 수출량이 미미하여 조사대항에서 제외통보
에어컨	8415.10.11, 8415.83.00, 8418.69.40	반덤핑종료	'10.02.16	조사종료 (무혐의 판정 : '11.07.18)	전기전자	- 행정령 441로 인해 무혐의 판정으로 조사 종료 - 조사대상국 :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 수입규제 내역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조사 중 1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1, 섬유 1, 기타 1 건(조사 중)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철강파이프(Casing and pump-compressor seamless steel pipes))	7304291100	세이프가드(규제 중)	'07.9.1	'11.10.6	철강 및 금속	- 조치종류 : 수입쿼터 - 적용기간 : '08.1.10-'11.9.30(3년) - 연차별 쿼터량 · 1년차 : 연간 14,504톤 · 2년차 : 연간 15,230톤 · 3년차 : 연간 15,955톤
성냥	3605	세이프가드	'08.11.26	'09.9.29	기타	- 특별관세 세율 : 11.3% - 적용기간 : '09.11-'12.11 월
파일편물	6001	반덤핑(규제 중)	'08.5.29	'09.4.30	섬유	○ 세율 - 한국산 27.99%, 중국산 140% ○ 적용기간 : '09.7.6~'014.7.5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세율인 140%가 적용

□ 2011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우크라이나의 수입규제 관련 종료 및 조사 중인 품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냉장/냉동고	8418	세이프 가드 (종료)	'10.5.6	'11.4.7	전기전자	2011.4. 7 : 비부과 결정 조사종료
승용차	8703.22, 8703.23	세이프 가드 (조사중)	'11.7.2		기타	○11. 7. 2 : 조사개시 공고 ○제조사: Ukravtoprom ○대상업체: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 르노삼성

○ 조치종료 : 1개 품목 (세이프가드)

-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Cooling and refrigerating equipment)는 2011.4.7일자로 조사 종료됨

○ 조사 중: 1개 품목 (세이프가드)

- 한국산 승용차(passenger car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2011.7.2.일자로 개시됨

[이집트]

□ 對韓 수입규제 내역(2011. 12. 8일 기준)

-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이집트로 부터 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DOP (Diocetyl Phthalte)	2917.32	반덤핑	'06.9.21	'07.7.8	화학	2007.7.1~2012.6.30까지 5년간 톤당 US\$ 109 반덤핑 관세 부과 원산지 한국산 제품 모두 해당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변동 사항 없음

- '99년 10월부터 부과된 타이어 품목(HS Code 4011.10/4011.20)은 '09년 10월 2일부로 규제가 종료됨

[인도]

□ 對韓 수입규제 내역(2011.12.14 기준)

- 인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1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반덤핑 규제 20건 및 세이프가드 규제 1건이 실시 중임. 또한 반덤핑 조사개시 및 세이프가드 조사 각각 1건과 2건이 개시됨

<對韓 수입규제 현황>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폴리에스테르장섬유의 기타 단사	5402.43	반덤핑	'05.6.27	'07.1.24	섬유	○US\$64/MT(효성 자체 생산품 직 수출 경우), US\$588/MT(생산자 이외 수출자가 수출한 경우) HK 생산품 직수출건은 가격인상약속으로 반덤핑 제외, 새한, 휴비스 직수출건은 반덤핑 제외 ○11. 5. 4: 일몰재심개시
2	PVC 서스펜션	3904.1000	반덤핑	'06.6.27	'07.12.26	화학	○ Rs.1984/MT(LG, 한화 생산자 직수출건 제외한 모든 케이스) ○ 관세율: 덤핑마진 LG화학 0.03%, 한화석유화학

연 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36%, 기타 8%
3	오프셋복 사용 알루미늄판	8442.5020	반덤핑	'96.9.13	'08.10.3	섬유	○ US\$5.682954/Kg ○ 관세율: 모든 한국업체 58.47%
4	아크릴 섬유	550330	반덤핑	'07.10.8	2008년 10월	섬유	○ Rs.22.27/Kg, 덤핑마진 16.53% ○ 한국기업전체
5	아크릴로 니트릴부 타디엔고 무	400259	반덤핑	'95.3.15	'07.10.4	화학	○ US\$38.73/MT(LG, 금호 직수출건), US\$362.75/MT (LG, 금호 이외 수출기업) ○ LG화학, 금호석유 화학(비고 : LG, 금호는 조사에 협조, 반덤핑관세 경감)
6	가성소다	281511 281512	반덤핑	'01.5.14	'11.7.7	화학	○ US\$401.05/DMT (한화석유화학 제품 직수출 또는 Tricon Energy를 통한 수출 품 이외) ○ 위의 조합외에는 모두 US\$366/DMT 적용
7	페놀	290711 290760	반덤핑	'07.1.11	'08.1.7	화학	○ US\$ 196/MT ○ '08.1.07 최종판정 덤핑마진 한국 27.28%, 대만 21.20%, 미국 33.45% ○ 10.11.26 : 한국산 중간재심개시
8	아세톤	29141100	반덤핑	'07.2.12	'08.5.9	화학	○ US\$67.33/MT ○ 관세율: 최종판정 덤핑마진 금호피앤비화학 및 LG화학 32.77%
9	과산화수소	28470000	반덤핑	'07.7.20	'08.7.18	화학	○ Rs.23,082/MT ○ 한국기업전체
10	석유화학 첨가제류	81210, 381220, 381230, 293420,	반덤핑	'07.7.6 중간재심 작일 : 2010.8.9	'11.8.5 중간재심 판정일: 2011.8.5	화학	○ Rs36.23/Kg(금호석유화학) ○ 이외 다른 제조/수출자 : Rs

연 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292520 상동					42.99/Kg
11	Compact D i s c Recordabl e	85239050	반덤핑	'07.9.12	'09.3.6	전기전자	○US\$53.38/pc ○한국전체기업
12	스테인 레 스 냉연강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반덤핑	'08.11.25 중간재심 시 작일 : 2010. 6.23	'09.11.24 중 간 재 심 판정일: 2011.6.8	철강 및 금속	○US\$148.05/MT(Posco 생산-Posteel수출), US\$96.70/MT(Posco 생 산-삼성물산 수출), US\$210.93/MT(Posco 생산-현대중합상사 수 출) , US\$234.98/MT(Posco 생산- SK 네트워크 수 출) , US\$74.88/MT(Posco 생 산- LG상사 수출), US\$62.61/MT(Posco 생 산-대우인터내셔널 수 출) , US\$922.34~1364.00/MT (Posco이외 생산기타 기업 수출
13	인산	280920	반덤핑	'08.11.12	'09.11.11	화학	○US\$221.64/MT ○관련기업: 전체
14	Sodium Hydrosulp hite (차아황산 소다)	28311001 28321002 283110	반덤핑	'02.11.14	'09.3.17	화학	○US\$1,034.76/MT ○관련기업: 전체
15	Potassium Carbonate (탄산칼륨)	28364000	반덤핑	'02.12.19	'09.5.20	화학	○US\$9.45/MT(UNID 생산 OCI Corp 또는 U N I D 수 출) , US\$123.86/MT(상기 이 외 케이스) ○관련기업: UNIC, OCI Corp.
16	Flexible Slabstock Polyol (유성판재 폴리올)	390720 390799 390791	반덤핑	'02.5.11	'09.7.22	화학	○US\$2,601/MT ○관련기업: 전체
17	N y l o n Filament Yarn (나일론 필 라멘트사) 상동	540210	반덤핑	'05.7.1 일몰재심 시 작일 : 2010. 8.27	일 몰 재 심 판 정 일 : 2011.11.19	섬유	○US\$1.14/kg ○전체에 적용

연 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8	TV 음극 선관	854011	반덤핑	'07.11.19	'09.2.17	전기전자	○최종판정(제품당) - LG 필립스> 15": 1448 INR 21": 1822 INR 29": 4369 INR 기타:3858 INR - 기타업체 -> 14": 1422 INR 15": 1953INR 21": 2282 INR 29": 4369INR 기타:4369 INR
19	스타리엔 부타디엔 고무)	390390 400219	반덤핑	'98.4.7	'10.6.30	화학	○US\$0.0689/Kg ○관련기업: 전체
20	스테인레스 냉연강 600mm 이 하의 400 시리즈	7220	반덤핑	'10.8.16	'11.11.14	철강 및 금속	○관련기업: 포스 코 SK네트웍스, 대우, LG ○ US\$1,491/MT
21	고무노화 방지제 (6-PPD), (PX-13)	3812,10/2 0 / 3 0 , 2934.20, 2925.20	세이프 가드	'10.12.27	'11.6.6	화학	○11.06.06 : 세이프 가드 부과 판정 (1st year: 30% m i n u s Anti-dumping duty payable 2nd year: 25% m i n u s Anti-dumping duty payable) ○대상업체: 금호석 유화학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총 3건의 새로운 반덤핑 (1건) 및 세이프가드(2건) 조사개시

- 한국산 무스프탈산(Phthalic Anhydride)은 2011.4.29일자로 반덤핑 조사개시 되었으며 동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8.10일자로 개시됨
- 한국산 Carbon Black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12.2일자로 개시됨

<인도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 중인 품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품목	비고
무스프탈산(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조사중)	'11.4.29	화학	○제조사: IG Petrochemicals Limited, Mysore Petrochemicals Limited, ○대상기업: 애경유화, 동양제철화학 ○11.04.29 : 조사개시(POI: 2010.1.1~2010.12.31)
무스프탈산(Phthalic Anhydride)	2917.35.00	세이프가드 (조사중)	'11.8.10	화학	○제조사: M/s. Thirumalai Chemicals Ltd., Ranipet, Tamilnadu, M/s. IG Petrochemicals Ltd., Raigad, Maharashtra, M/s. Mysore Petrochemicals Ltd, Raichur, Karnataka ○대상기업: 애경유화, 동양제철화학 ○ 11. 9.23 : 예비판정공고(180일동안 10%의 증가세(ad-valorem) 부과)
Carbon Black	2803 00 10	세이프가드 (조사 중)	'11.12.2	화학	

○ 총 3건의 반덤핑 규제가 종료됨

- Hot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스테인리스 열연강), Polypropylene(폴리프로필렌),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PVC Paste(PVC 페이스트)

<인도의 수입규제 관련 종료된 품목>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스테인리스 열연강	7219	반 덤 핑 종료	'10.4.12	최종판정 일: 2011.10.11	철강 및 금속	○반덤핑 종료 한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관세 : 0
폴리프로필렌	3902	반 덤 핑 종료	'10.2.10	'11.5.25	화학	관련기업: 호남석유, 폴리미래, 삼성토탈, 대한유화, SK에너지, LG화학, 효성, GS칼텍스
PVC 페이스트	3904	반 덤 핑 종료	'09.11.3	'11.5.2	화학	○US\$ 1,706/MT ○최종판결: 한화 : (3 . 7 %) , LG:(4.79%), 기타:51.53% ○11.5.25. 조사종결

[인도네시아]

□ 對韓 수입규제 내역(2011.12.09)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4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연 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열연코일	72081000 72082510 72082590 72082600 72082700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00 72089000	반덤핑	'09.4.8	반덤핑: '10.12.3	철강 및 금속	- 규제대상 기업: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등 4개사를 제외한 모든 한국 업체 - 관세율: 3.8% - 과세기간: '16.2.7 까지 부과 예정
2	기타 철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	73121090	세이프 가드	'10.4.30	'11.4.10	철강 및 금속	- 관세율 · 1차년도: RP24,080/kg · 2차년도: RP21,464/kg · 3차년도: RP18,849/kg - 발효일: '11.3.23
3	면직물	52081100 52081200 52081300 52087900 52082300 52082900 52092900 52101100 52111200	세이프 가드	'10.6.30	'11.4.10	섬유	- 관세율 · 1차년도: RP 116,800/kg · 2차년도: RP 109,590/kg · 3차년도: RP 102,200/kg - 발효일: '11.3.23
4	방수천, 차양	63061200	세이프 가드	'11.3.22	세이프가 드: '11.12.2	기타	- 관세율 · 1차년도: RP 13,643/kg · 2차년도: RP 12,643/kg · 3차년도: RP 11,643/kg - 발효일: '11.11.17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방수천 및 차양에 대하여 '11년 7월 15일 세이프 가드 발동을 결정, 향후 3년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예정
- '11년 6월 인도네시아 반덤핑 위원회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 중인 품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냉연강판	7209.16.00.10, 7209.17.00.10, 7209.18.90.00, 7209.26.00.10, 7209.27.00.10, 7209.28.89.00, 7209.90.90.00, 7211.23.20.00, 7211.23.90.90, 7211.29.20.00, 7211.29.90.00, 7211.90.10.00, 7211.90.90.00	반덤핑 (조사 중)	'11.6.24		철강 철강 및 금속	조사 중

- 한국산 비코트 인쇄용지에 대하여 '11년2월1일 반덤핑 규제 종료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관련 종료된 품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비코팅 인쇄용지	48025590 48025690 48025700	반덤핑 규제 종료	'03.2.10	'11.2.1	기타	○ 규제대상 기업: 한솔제지, 신무림제지 신호제지 및 기타 한국 제지 업체 ○ 관세율: 25% ○ 11. 2. 1 : 종료 (2010.02.01일부터 일년간 소급적용)-한솔, 신무림페이퍼, 신호 제지 25%

[일본]

□ 수입규제 내역

○ 2011년 12월 현재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는 아래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503.20	반덤핑	'01.4.23.	'07.6.19.	섬유	○ 피소기업 : 삼영합섬, 대양산업, 휴비스, 성립, 삼흥 -세율 : 삼흥 6.0%, 기타 13.5% -2007년 7월 과세기간 연장 (2012년 6월28일까지)

[중국]

□ 對韓 수입규제 내역(2011.12.9 현재)

○ 2011년 12월 9일 현재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규제조치는 17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이염화메탄	2903.1200	반덤핑	'00.12.20.	'07.8.15.	화학	○관세율: 4~66% ○삼성정밀 4%, 기타 28% ○'07.8.15. 관세부과 5년 연장, 삼성정밀화학 4%, 기타 업체 28%
2	아트지 (동판지)	4810.13/14/19	반덤핑	'02.2.6.	'09.8.5.	기타	○관세율: 4~51% ○'09.8.5. 관세부과 5년 연장, 무림, 신무림제지: 4%, 신호, 한국제지: 9%, 한솔제지: 16%, 계성, 남한, 풍만제지: 31%, 기타: 51%

연년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3	무수프탈산 (PA)	2917.3500	반덤핑	'02.3.6.	'03.9.2.	화학	○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합화학 4%, 기타 13% ○재심개시('08.8.31) ○'09.8.31. 관세부와 5년 연장, 애경유화 0%, 고합화학 4%, 동양제철화학 4%
4	합성고무 (SBR)	4002.19.11/ 12/19	반덤핑	'02.3.19.	'07.11.21.	화학	○관세율: 7~27% ○'05.12.13 재심결과, LG 대산유화 4.5% ○'07.11.21.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재심개시('08.9.4.) '09.9.8. 관세부와 5년 연장
5	폴리염화비닐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9.9.28.	화학	○관세율: 6~76% ○일몰재심개시('08.9.29.~'09.9.29.) ○'09.9.29. 관세부와 5년 연장, LG 화학 6%, 한화석유화학 12%, 기타 76%
6	TDI	2929.10.10	반덤핑	'02.5.22.	'06.1.10.	화학	○관세율: 3~49% ○'06.1.10 재심결과 4.05~61.4% ○일몰재심 개시('08.11.22.~'09.11.21.) ○'09.11.21. 관세부와 5년 연장
7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10.2.1.	화학	○관세율: 5~16% ○금호P & B 5%, 기타 16%, LG 석유화학 0%('06.9.5.) ○'09.2.1. 일몰재심 착수 ○'10.2.1. 관세부와 5년 연장, 금호P&B 5%, 기타 16%
8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화학	○관세율: 32~96% ○'09.11.30. 일몰재심 착수, 기타 96%
9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전기전자	○관세율: 7~46% ○'07.4.16. 한국 오토매직社 재심신청 ○'08.4.14. 한국 오토매직社 재심결과 발표(2.3%) ○일몰재심('10.1.1~'11.1.1) ○'11.1.1. 부 관세부와 5년 연장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화학	○관세율: 28~184% ○일몰재심개시 ('10.6.17~'11.6.17) ○'11.6.17.부 관세부와 5년 연장, KOC 28%, 기타 35%
11	ECH Epi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화학	○관세율: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11.6.28 일몰재심착수
12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or spandex; or elastane	5402.44.10 5402.69.20 세번 변경 (2011 기준) 54024410 5402490001 54026920	반덤핑	'05.4.13.	'06.10.13.	섬유	○효성 0%, TK 화학(주) 2.86%, 태광산업 2.31%, 기타 한국기업 61.00% ○'11.10.13 일몰재심개시
13	비스페놀A (BP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30.	화학	○금호P & B 5.8%, LG석유화학 6.4%, 기타 한국기업 37.1% ○'09.12.15. LG화학 반덤핑세율 4.7%로 인하
14	아세톤	2914.11.00	반덤핑	'07.3.9.	08.6.8.	화학	○관세율: 5~51.6%, LG 화학 5%, 금호P&B 8.9%, 기타 한국기업 51.6%, 금호P&B 4.3%로 인하('10.9.10.)
15	유기실리콘 중간체	2931.0000 3824.9099	반덤핑	'08.5.28.	'09.5.28.	화학	○'09.5.28.부 반덤핑관세 부과 (KCC 25.1%)
16	아디프산	2917.1200	반덤핑	'08.11.10.	'09.11.1.	화학	○'09.11.2. 반덤핑관세 부과 Rhodia Korea Co. Ltd 5.9%, Rhodia Polyamide Co., Ltd. 16.7% Asahi Kasei Chemicals Korea Co. 5.0%, 기타 한국기업 16.7%
17	TPA	2917.3611	반덤핑	'09.2.12.	'10.2.3. (예비판정) '10.8.12. (최종판정)	화학	○삼성석유화학.KP화학 2.0%, 효성 2.6%, SK유화 11.2%, 삼남석유화학 3.7%, 태광산업 2.4%, 기타 한국기업 11.2%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중국의 수입규제 종료 품목>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1/32/ 33/34/35/90, 7220.20	반덤핑조 치 종료	'99.6.17.	'11.4.8	철강 및 금속	관세율: 포철 11%, 인 천제철 4%, 심미특수강 6%, 대한전선 7%, 대양 6%, 삼원정밀 9%, 기타 57%.
2	핵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조 치 종료	'04.11.12.	'11.5.12	화학	대상 25%, 기타 119% '11.5.12.

○ 반덤핑 규제 종료(2건)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11.4.8), 핵산('11.5.12)

[캐나다]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로부터 2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구조용 강판	7306.30.10.23 7306.30.10.33 7306.30.90.23 7306.30.90.33 7306.50.00.30 7306.61.90.12 7306.61.90.22	반덤핑	'03.05.21	'08.12.22.	철강	- 판정결과 : 반덤핑관세율 89% - '08.12.11. 수입규제 종료재심 결과, 수입규제 지속 결정 - '10.12.10 재조사 개시 - '11.03.11 재조사 결과 발표 : 한국 업체 정상가격 미제출 - 반덤핑관세율 89% 유지 결정
동계 관연결구	7412.10 7412.20	반덤핑	'06.06.08.	'07.02.19.	금속	- 판정결과 : 반덤핑관세율 104% - '07.08.16. 덤핑률조정 : 정상가를 제 출한 정우금속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 수출가격에 242% 반덤핑 관세 부과 - '11.06.02. 일몰재심 개시 - '11.09.29 일몰재심 긍정판정 - '12.02.17 일몰재심 최종판정 발 표 예정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對韓 수입규제 변동내역

- 2011년 12월 5일 기준, 캐나다는 구조용 강관, 스테인레스 강선, 동제 관연결구 등의 세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적용중이며, 2008년 12월 이후 캐나다의 對韓 수입규제 변동내역은 없음

○ 구조용 강관, 반덤핑 수입규제 지속

- 2010년 12월 10일 캐나다 관세청(CBSA)은 구조용 강관에 대한 재조사(Re-investigation)를 개시하였음
- 2011년 3월 11일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산 구조용 강관 덤핑이 캐나다 산업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89%의 반덤핑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

○ 동제 관연결구, 일몰재심 긍정판정

- 2011년 6월 2일 캐나다 관세청(CBSA)은 동제 관연결구에 대한 일몰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였음
- 2011년 9월 29일 일몰재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 덤핑이 캐나다 산업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긍정판정을 하였음. 일몰재심 최종 판정은 2012년 2월 17일 발표 예정

[태국]

□ 수입규제 내역

-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태국으로부터 2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또한 반덤핑 조사가 3건 개시됨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200032-72 202090056	반덤핑	'02.2.22	'11.2.27	철강	○ 반덤핑관세 50.99% ○ 기간 : 2011.2.27~2014.7.16 ○ 11. 2.26 : 재심결과(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결정 유지)
열연 철강 및 열연 코일	7208, 721113, 721114, 721119	반덤핑	'02.7.22	'09.5.27	철강	○2009. 5.27 최종판정(포스코 0%, 기타 13.96%) ○기간 : 2010.7.1-2014.7.1 ○2009. 6.17 신규직권 상황재심 개시(덤핑률 의 지속적인 변동을 이유로 제시)

자료원 : 태국 상무부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판정

- 태국은 2009년부터 반덤핑 부과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2월 최종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
- 반덤핑관세율은 CIF 기준 50.99% 이며 기간은 2011.2.27~2014.7.16 임

○ 열연 철강 및 열연 코일 반덤핑 지속

- 2010년 반덤핑 판정을 받은 열연 철강 및 열연 코일 제품은 2014년 7월까지 반덤핑 지속

<태국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 중인 품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품목	비고
코팅지(Coated paper and Paperboard)	4810	반덤핑 (조사 중)	'11.7.8	기타	○ 11.7.8 : 반덤핑 조사 개시 ○ 대상기업: 무림제지, 한솔제지
도색 아연도금강판(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7210.70	반덤핑 (조사 중)	'11.7.8	철강, 금속	○ 11.7.8 반덤핑 조사 개시 ○ 대상기업: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현대하이스코, POSCO, DK동신
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7210.61	반덤핑 (조사 중)	'11.7.8	철강, 금속	○ 11.7.8 반덤핑 조사 개시 ○ 대상기업: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현대하이스코, POSCO, DK동신

[터키]

□ 수입규제 개요

- 터키 경제가 큰 폭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터키의 수출과 수입이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2010년과 대동 소이

- 반덤핑 신규 규제 2010년 11건 → 2011년 12건으로 거의 같은 수준

- 터키정부는 현재 반덤핑 및 재심조사 등 9개국을 대상으로 9건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2010년 3개국, 7건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최대 피소국은 중국으로 총 5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외 태국, 인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브라질, 한국 등이 있음
- 조사 진행 중인 주요 품목은 폴리에스터, 피팅(Fittings), 인조 플로어링 등

□ 수입규제 내역

- 현재 4개 한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7개 한국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또한 1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됨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연 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	5407 일부	반덤핑	'00.10.31	'08.8.1	섬유	○해동 38.61%, 대광, 동흥무역, 동성무역, 덕동, 현마무역, 승우무역, 서광, 서광무역, 성광, 선문, 을화 14.64%, 최고마진 40.0% - 07.2.11 반덤핑재심연장 조사개시 - 2008.8.1 연장 확정 - 2013.8.1 종료 예정
2	금속드리사	5605.00	반덤핑	'04.2.7	'10.7.24	섬유	○관세율 U\$2.2/kg - 2009.9.17 재심조사 개시 - 2010.7.21 연장 확정 - 2015.7.21 종료 예정 ○ 10.7.24 일몰재심 결과 발표(U\$2.2/kg 반덤핑 관세유지 결정) -수출량 미미하므로 대응 안함
3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99.3.4	'06.9.8	섬유	○선경 11.9%, 삼양사.고합24.6% - '06.9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모든 업체 10%) -2011.9.8 종료 예정 → 재심조사 중
4	폴리에스테르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6.12.21	섬유	○관세율:33.7% -2011.12.21 종료 예정
5	모터사이클	871110/2 0/30	세이프가 드	'06.8.15	'10.1.14	기계	○ 2010.01.14 : 연장조치 (2009.8.15~2012.8.14)
6	안경테	9003.11/1 9	세이프가 드	'07.2.11	'11.11.8	기타	○ 2011.11.08 : 3년간 연장(14.03.04까지)*최종장관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1년 제 : 2.55 US\$ per piece 2년 제 : 2.40 US Dollars per piece 3년 제 : 2.25 US Dollars per piece
7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4202	세이프가 드	'07.6.5	'11.11.8	기타	○ 2011.11.08 : 연장판정(2014.04.07까지) 1년제 2,70 \$ / Kg Max 4,25 \$ / Piece 2년제 2,60 \$ / Kg Max 4,00 \$ / Piece 3년제 2,50 \$ / Kg Max 3,75 \$ / Piece
8	전기제품류	850811, 850940, 850980, 851631, 851660	세이프가 드	'07.12.19	'11.11.8	전기전 자	○11.11.08 : 예비판정 공고(최대 200일) HS Code Description of the Product Additional Duty (USD per piece) 8508.11.00.00.19 Others 4,75 8509.40.00.00.11 Grinders 3,75 8509.40.00.00.12 Mixers 3,75 8509.40.00.00.13 Blenders 3,75 8509.40.00.00.15 Complete sets 5,70 8509.40.00.00.19 Others 3,75 8509.80.00.00.11 Mincing appliances 5,70 8516.31.00.00.19 Others 3,75 8516.60.90.00.11 Toasters 4,75

연 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9	진공청소기	8508.11, 8508.19	세이프가 드	'09.5.31	'10.1.14	전기전 자	○ 2010.01.14 :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2009.08.10~2012.08.09) * 110V 이하 진공청소기는 전기제품류(Certain Electrical Appliances)에 대한 세이프가드에서 규제중임.
10	섬유직물	5408, 5407	세이프가 드	'11.1.13	'11.7.22	섬유	○11. 7.22 : 잠정부과된 20% 추가관세 시행
11	PET	3907.60	세이프가 드	'11.3.11	'11.6.11	화학	○11. 6.11 : 세이프가드 부과 판정(1년8%, 2년7.5%, 3년7% (CIF%))

자료원 : 터키경제부(www.ekonomi.gov.tr)

- 한국산 섬유직물 및 PET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각각 11년 1월 13일, 11년 3월 11일에 개시되어 관세부과 판정을 받고 현재는 해당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2011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한국산 섬유직물 및 PET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각각 11년 1월 13일, 11년 3월 11일에 개시되어 관세부과 판정을 받고 현재는 해당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2011년 12월 현재 재심조사를 포함하여 총 9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의 7건에서 다소 증가함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총 1건

- 터키는 현재 한국산 면사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

<터키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 중인 품목>

연 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품목	비고
1	면사(cotton yarn)	52.05	세이프가 드(조사중)	'11.6.11	섬유	○11. 6.11 : 조사개시(WTO 문서 : N/11/TUR/17) - 동 제품은 이미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로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조사 중 17% 잠정 관세부과

[파키스탄]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파키스탄 수입규제로는 기존 덤핑규정이 5건, 2건이 조사 중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염화비닐수지	3904.1090	반덤핑	'04.6.25	'09.10.26	화학	○덤핑마진 : 40.18% ○당초 2009년 10월 종료예정, 향후 5년간 연장 결정 ('10.10)
2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	5402.3300 5402.4300	반덤핑	'05.5.12	'06.3.12	섬유	○덤핑마진 : 한국 6.92% ○당초 2010.11월 종료예정 ○덤핑관세 연장 검토 개시('10.12), TK케미칼-이의제기로 비적용 ('11.10)
3	폴리에스테르원면	5503.2010	반덤핑	'06.8.9	'07.6.5	섬유	○반덤핑관세 한국 : 2.14%, 인도네시아 : 5.04%, 태국 : 4.34~10.26% (2012.2.8 종료예정)
4	무수프탈산	2917.3500	반덤핑	'09.5.29	'10.9.30	화학	○반덤핑관세 한국 7.36%, 중국 11.84%, 브라질 6.17%, 인도네시아 5.87%, 대만 : 27.28%
5	편면코팅판지	4810.9200 4810.9900	반덤핑 (조사 중)	'09.6.26	잠정판정 '09.12.21	기타	○잠정덤핑방지관세 한국 : 한솔 3.12%, HM사 6.27%, 기타 한국 20.79%, 인도네시아: Fajar 10.15%, 기타 11.17%, 중국 : 18.01, 대만 : 10.51%
6	과산화수소	2847.0000	반덤핑	'09.8.31	'11.7.6	화학	○반덤핑관세 한국 : 14.77% (한솔,OCI 부과 제외) 벨기에 9.2%~84.48% 태국 : 3.52%~25.04% 인도네시아 25.2%, 중국 : 71.93%, 대만 : 35.61, 터키 : 25.61%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기존 규제 내역

- 2009년 제소된 Phthalic Anhydride(무수프탈산)에 대한 조사는 2010년 9월 최종 덤핑판정이 내려져 한국에 7.36%, 브라질 6.17%, 중국 11.84%, 인도네시아 5.87%, 대만 27.28%의 최종 덤핑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짐
- 2009년 6월 개시된 One Side Coated Duplex Gray Paper Board(일면 코팅 이중 판지)에 2009년 12월 한국 한솔 3.12%, HM사 6.27%, 기타 20.79%의 잠정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고 인도네시아 Fajar사 10.15% 기타 인도네시아 11.17% , 중국 18.01%, 대만 10.51%의 잠정 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 후 조사가 진행 중임
- 2004년 10월부터 부과가 결정된 PVC 레진의 경우 당초 2009년 일몰제 적용으로 부과가 종료되어야 하나 파키스탄 정부의 일몰(종료)검토 후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

○ 2011년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05년 11월부터 부과된 Polyester Filament Yarn 의 경우 2010년 11월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되어 부과가 종료되어야 하나, 관련 국내 산업의 연장요청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검토가 개시됨('10.12월). 한국의 TK 케미칼사는 2010년 10월 덤핑방지관세율 별도 적용을 위해 개별조사를 신청하였고 2011년 10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한편, 2011년 2월 한국과 중국산 Formic Acid 85%에 대한 덤핑제소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Formic Acid는 가죽산업, 제약산업, 식품산업, 농업, 섬유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임
- 한국산 Hydrogen Peroxide(과산화수소)는 2009년 8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2011년 7월 최종 덤핑판정이 내려졌음. 한국의 한솔과 OCI사에 대해서는 덤핑마진이 2% 미만으로 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되었으며 기타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14.7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됨

○ 반덤핑 조사개시 총 1건

- 파키스탄은 한국산 포름산 제품에 대해 '11년2월23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파키스탄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 중인 품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품목	비고
포름산(Formic Acid 85%)	2915.1100	반덤핑 (조사중)	'11.2.23	화학	○ 11. 8.23 : 예비판정 (한국 48.19%(export price), 44.10%(c&f price)) ○ 산업피해와 덤핑과의 인과관계가 약하여 잠정조치 미부과(최종판정은 12월에 있을예정)

[필리핀]

□ 수입규제 내역

- 필리핀은 3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Ceramic Tiles	6907 90 6908 90	세이프 가드	'07.9.3	'07.11.28	기타	- Kg 당 Php 1.80 (US\$ 0.4)
판지 (Testliner Board)	4805 2400 4805 2510 4805 2590	세이프 가드	'10.6.8	'11.8.11	기타	○11.8.11: 부과판정(1년째: 1,342.00 페소/MT) -3년간 부과(매년 완화) *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주요 2010년 수출국임
Float Glass	7005 2190 7005 2990	세이프 가드	'09.9.2	'09.11.20	기타	○ Clear Float Glass - 톤당 Php3,583.83(US\$75) ○ Tinted Float Glass - 톤당 Php4,526.94(US\$94)

* Steel Angle Bar도 세이프가드가 적용 중이나 한국은 시장점유율 3% 미만으로 제외

[호주]

□ 수입규제 내역

- '10.12월 현재 총 1개 한국산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수입규제 적용을 받는 한국산 품목의 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 10개(06.6) → 9개(06.12) → 8개(07.5) → 6개(08.4) → 5개(08.8) → 4개(08.12.5) → 2개(09.12.14) → 1개(10.03.23)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백상지	4810.13.90/56 4810.19.90/57 4810.29.90/64 4810.99.00/80 4810.99.00/85	반덤핑	'04.12.15	'05.7.27	기타	2010.05.7 재심 결과 관세 부과 5년 연장, '15.7.27 종료 예정.

□ 2011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반덤핑 조사개시 1건
 - 호주는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에 대해 '11년 9월19일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EU]

□ 수입규제 개요

- 2011년 EU의 역외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현황

- 2011년 12월 초(6일 기준)까지 총 39건의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이중 21건이 신규 조사였고, 10건이 중간재심. 5건이 만기재심 그리고 1건이 우회조사, 2건이 신규수출국에 조사였음
- 2010년 43건이었던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에 비해 올해는 39건으로 8%가 감소한 것이며 2009년에 이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신규조사 개시된 21건 중 16건이 반덤핑 조사이며 나머지 3건이 상계관세, 나머지 1건이 재심이었음

○ 대상품목 현황

- 신규조사 대상품목 21건 중 7건이 철강제품이며 이어 화학 5건, PET (2건 모두 인도산), 유리섬유(2건 모두 중국산), 아세트산 비닐 (1건 미국산),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1건 중국산)과 대두 단백질 제품 (2건 모두 중국산) 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주된 품목임. 특이한 것은 지난해에는 없었던 식품관련 제품이 2건이 있다는 것임

○ 대상 국가 현황

- 신규조사 21건 중 중국이 11건을 차지하면서 EU의 견제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어 인도 5건,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각각 2건. 러시아/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가 1건임

□ 2011년 대한 수입규제 내역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철강제 관련 결구류	7307.9311, 7307.9319, 7307.9930, 7307.9900	반덤핑	'01.6.1	'11.9.29	철강 및 금속	-01.06 반덤핑조사개시 -03.05.08 세이프가드와 반덤핑관세 동시부과로 과중한 부담이유로 반덤핑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인하율 04.04.29-05.02.28 24.8% -07.08.13 일몰재심 조사개시 -08.10.1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태광, 성광벤드 등이 해당업체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PET 칩	3907.6020	반덤핑	'99.11.6	'07.2.27	화학	-07.02.27 덤핑 마진 주요 4개사는 0.4%, 기타업체 148,3 euro/ton -중간재심은 제소자인EU 플라스틱 제조업협회 요청. -11.02.24 반덤핑부분 철회판정 -11.04.20 반덤핑부과 종료일자 임박 공고 -국내대상업체는 고합,대한화섬,동국무역,새한인더스터리,나케미칼,호남석유화학,효성, 삼양사 등8개
철선로프	7312.1081, 7312.1083, 7312.1085, 7312.1087, 7312.1098	우회 반덤핑(중국으로부터)	2005.4.26	2010.4.27 (우회반덤핑 조치 연장)	철강로프 및 케이블	-보성와이어, 청우로프,CSCCO, 코스모와이어,대흥산업, DSR 와이어, KIS와이어, 만호로프, 신한로프,쌍용케이블, 용흥철강은 우회반덤핑 협의를 받아 덤핑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세일은 재심요청하고 EU 당국은 검토결과 2011.9.29자 관보를 통해 동사에 대한 우회덤핑 조치 폐지

□ 2011년 대한 수입규제 변동 내용

○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 2011.08.31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side-by-side refrigerators)에 대한 반덤핑 부과 종료를 공고

○ 철선로프

- 한국산 철선로프(보성와이어, 청우로프,CSCCO, 코스모와이어, 대흥산업, DSR와이어, KIS와이어, 만호로프, 신한로프, 쌍용케이블, 용흥철강 제외)는 중국으로부터 우회 수출되는 것에 대해 우회덤핑 조치를 받고 있음
- 우회반덤핑 조치 대상이었던 세일사가 재심을 제기하자 EU는 2011.9.29자 관보를 통해 동사에 한해 우회덤핑 조치를 폐지함

○ 2011년 12월 초 현재 신규 제소 건수는 없음

2. 對韓 수입규제 전망

가. 총괄

□ 유럽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지속 우려

○ 유럽발 금융위기와 함께 실물경제 역시 위축되면서 각국의 무역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최대의 녹색에너지 시장인 유럽이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를 겪으면서 태양광 등 녹색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

- 이에 따라 미국의 녹색산업도 불황을 맞고 업체의 파산도 확산됨.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조사를 시작하는 등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또한 미국은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예비 관정에 따른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피해 발생

○ 2012년에는 경제 더블딥 우려, 각국의 내수 침체로 인한 산업계의 부진으로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철강, 화학, 자동차와 부품 등 주력수출 품목에 견제 지속 전망

○ 미국, 인도, 터키, 브라질 등 철강 생산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도 한국산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수입규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남아프리카 공화국]

□ 통상정책 방향

- 남아공은 25.7% 이상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줄이기 위해 남아공 경제 성장 촉진 정책(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South Africa, AsgiSA)을 발표함
 - 동 정책은 기업의 남아공 노동력 사용과 내국산 제품 사용 등의 보호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우려가 상존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최근 한국산 승용차와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 스티렌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규제의 우려가 있음
 - 승용차 motor car로 검색되는 HS code는 8703, 8704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HS code 8704는 20%의 증가를 보였으며, HS code 8703는 50%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 (HS code 7208, 90% 증가), 스티렌의 중합제 (HS code 3903, 48.96%) 등이 높은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러시아]

□ 통상정책 방향

- 러시아 및 관세동맹의 수입 구조와 예측 역학을 봤을 때, 평균관세는 2011년 9월 9.64%에서 2012년에는 9.5%, 2013년 9.33%, 2014년 9.15%로 인하될 것으로 예측됨.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이 12월 중순에 성공적으로 끝나 러시아가 WTO에 가입되어 관세는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WTO 규정에 맞게 제도를 표준화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조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구성된 관세동맹과 관련하여, 3국은 특별보호, 반덤핑, 및 보상조치에 대한 3국 협정을 2008년 1월 25일에 맺음. 또한 2010년 11월 19일에는 과도기간 동안 반덤핑, 특별보호, 보상 조치 적용 절차에 대한 협정을 맺음. 관세동맹 위원회의 대외무역 보호조치 부서는 2011년 10월 18일 이후로 특별보호, 반덤핑 및 보상 조사에 따른 업무가 맡겨짐. 관세동맹 회원국의 경제부문을 대신하여 위원회 부서에 적절한 조사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10월 18일 이전에 제출되었던 신청서는 회원국의 해당 기관에서 처리됨
- 자국 수출업체 지원책의 하나로 러시아 수출 용자 및 투자 보험 기관(EXIAR OJSC-www.exiar.ru)이 2011년 10월 13일(공식 등록일)에 설립됨. 동 기관은 국내 완제품 수출 지원을 중기적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 최대 20년까지 수출지원과 대출지원을 해줌. 주요 업무는 러시아 장비 및 기술의 수출을 증진하는 것이며, 자금은 국가예산 및 국영 VheshEconomBank에서 조달함. 자금은 300억 달러이며, 이 기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

□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

○ 아연도금강판(Zinc-coated rolled steel)

- 2009년 1월, 세베르스탈(Severstal), 마그니토고르스크 메탈(Magnitogorsk Metal), 노보리페츠크 메탈(Novolipetsk Metal) 등 러시아 주요철강생산 업체들은 국내 수요가 절반가까이 떨어진데다 싼 외국철강제품들이 대거 수입되어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세이프가드 조치 요구

○ 중소형 스테인레스 강관(Stainless steel pipes of small and medium diameter)

- 러시아의 파이프 생산업체들은 2009년 1월 정부에 의해 취해진 일부 강관 및 철강제품의 임시 수입관세 인상폭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좀 더 높은 수입관세 부과를 요청. 특히, 새로 도입된 임시 수입관세의 경우 중국, 일본, EU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주로 적용되어 CIS국들(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중소형 스테인레스 강관에는 별 효과가 없음을 주장함

○ 일부 화학제품(Some chemical products)

- 2009년 1월 21일 JSC"Sibur Holding Group"은 아래 몇 가지 화학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을 요청하며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 요구

H.S. Code	Item
2905 31 000 0	Ethylene glycol
2917 36 000 0	Terephthalic acid
3901 10 900 0	Polyethylene
3902 10 000 0	Polypropylene
3907 60 200 0	PET
4002 19 200 0	Co-polymer of Butadiene and Styrene
4002 19 900 0	Rubber of Butadiene and Styrene
5603 94 900 0	Non-woven materials

○ 덴마크의 Novo Vordisk에 의해 생산된 몇몇 의약품(Norditropin, Nordilet and NovoSaven)

-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는 2010년 10월 15일 상기 언급된 의약품의 2008-2010년 동안의 러시아 수입에 대해 조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발표. 이와 같은 결정은 덴마크 제약회사가 가격을 고정시켜 러시아 국내 시장보다 의약품 가격이 훨씬 낮다는 의혹을 제기한 러시아 식약청(Russia's Pharmstandard)에 따른 것임. 이 성명은 초기 조사 기간 동안 반덤핑이 입증될 경우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

○ PCs

- 지난 7월 K-Systems LLC은 PCs (H.S. Code 8471 41 0000)에 대한 관세를 요청한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에 현 0% 관세를 유지할 것을 신청함. 동 요청은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PC 제조사업을 러시아에서 실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가죽신발(Leather Footwear)

- 2011년 11월 보호 무역 조치를 위한 러시아 하위위원회는 가죽신발류에 대한 현재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함. 러시아 측은 한 켄레 당 1.8 유로, 2.5유로가 아니라 10%로 관세를 올리기로 함. 이는 관세동맹 위원회에서 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벨라루스 측이 켄레 당 2.7유로가 아니라 20% 관세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임

○ 광산용 기계의 일부 항목(Some Items of Mining Machinery)

- 2011년 11월 러시아의 "Yurga Machine-Building Works" LLC 는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에 광산컨베이어(H.S. Code 8428 31 000 0; 현 관세: 5%), 석탄 절단로더(H.S. Code 8430 39 000 0; 현 관세: 0%), 자가 추진 터널링기(H.S. Code 8430 41 000 0; 현 관세: 0%), 이동식 수력작동 광산

페스너(H.S. Code 8479 89 300 0; 현 관세: 5%)에 대한 10% 수입관세를 요청함. 위에 언급한 기계 관련 제조업체들에게 있어서 높은 관세문제가 고려됨

[말레이시아]

□ 통상 정책 전망

- 재정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제는 외부의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1년 2분기의 4.3%에 대비하여 3분기에 5.8% 정도 성장했다고 발표. 이는 국내 수요가 활발하고 무역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었음
- 2011년 1~9월 간 전체 무역액은 2010년 같은 시기에 비교하였을 때 8.6% 증가함. 총 수입액이 8.9% 증가하며 무역규모가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12년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2012년 전망이 외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거시경제정책과 경제변형프로그램(ETP)등의 경제 정책들의 실행과 튼튼한 경제 기반이 국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의 실질 GDP성장률은 2012년 5%에서 6%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 예상치는 지역 내 무역, E&E 수출과 안정된 상품가가 지속되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말레이시아 통계청, 재정부)
-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이는 상호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 방안을 개발하자는 말레이시아와 한국 양국 리더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 이번 조사는 2011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12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

- 조사 시작 후 6개월 내 양국의 각 조사 상황 및 즉각적인 결과를 교환하기 위해 만나기로 동의
- 조사 목적은 한-아세안 FTA를 넘어서 양국 간 FTA 체결의 영향을 알아보고,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가늠하려는 것임
- 조사 결과에 따라, 양국 모두 양자 FTA 협상 체결을 가능케 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개발할 예정

□ 예상 수입규제 품목

- 말레이시아는 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활발한데 최근 경제활황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음
- 최근 말레이시아의 메가스틸사는 원자재인 평강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25%에서 15%로 줄이는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음
- 2011년 In June 2011, 말레이시아 건축청부업자연합(MBMA)는 정부에게 모든 건축 자재와 장비들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완화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

[멕시코]

□ 통상정책 방향

- 멕시코 현 정부의 주요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대외무역 시장 개방으로 요약됨
- 멕시코 평균 관세의 경우도 점차 관세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2011년 12월 기준최혜국에 대한 단순 평균관세율은 4.7%, 2012년에는 4.4%로 인하될 예정임. FTA 및 각종 경제협정 체결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95%, 산업특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산품 가중치 평균 관세율은 3.4%임.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07년 11.2%, '08년 10.4%, '09년 8.3%로 낮아졌으며, '10년 5.2% (자동차 30%, 타이어 15%), '11년 4.7%, '12년 4.4%(자동차 20%), '13년 4.3%가 예상됨

- 현 정부는 한국, 파나마, 브라질 등과 새로운 FTA 체결을 논의하는 등 개방적 통상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철강을 비롯한 화학업계를 주축으로 한 멕시코 산업계의 반발이 심해 깔데론 행정부 내에서 신규 체결한 FTA는 2개에 불과함. 2012년도 대선 후 집권정당이 교체될 경우, FTA에 대해서도 정책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이 멕시코에서 임가공을 통한 미국 재수출 목적이고, 멕시코 시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품목 중에서 수출량이 급증하는 품목은 노트북을 비롯한 전자제품 위주이나 이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음
- 한편,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따라 중국산제품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멕시코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동 유예기간이 2011년 12월 11일부로 철폐되며 섬유, 양말 분야 등에서 한국산과의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임

[미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미국 평균관세 세계 최저수준
 - 미 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평균관세가 1.3%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국가에 속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중대한 수입규제가 존재함을 인정
 -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장벽 제거만으로도 미 경제후생이 2015년까지 매년 26억 달러 증가하고 수출은 90억 달러, 수입은 115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무역상대방과의 상호적인 수입장벽 제거 경제적 후생 증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금액 징수방식 전환 움직임, 실현 시 수출기업 애로 증가할 듯

- 미 세관 자문위원회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품목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관세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관할 때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 고려
- 현재 미국은 물품이 세관 통과한 이후 적용관세를 징수하는 방식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회계연도 미회수 관세액 감소율은 전년 50%에서 31%에 그침
- 향후 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받을시 관세회피 불가능하여 관세부과 판정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
- 미징수된 총 관세액중 95.9%가 중국제품이며 목재 침구용 가구가 그 중 79.6%를 차지하여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경우 최대 감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통상정책 방향

○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고실업률 지속되는 등 미 경제부진 장기화 우려

-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S&P가 2011년 8월 미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시켰고 11월 실업률이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9% 내외의 높은 수치 기록
- 더구나 유럽 재정위기라는 외부적 위협이 미 경제에 전이될 가능성 존재하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 경기부양책 시행 어려움

○ 재정부담이 적은 수출진흥정책 추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27일 연두교서를 통해 5년내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수출진흥전략을 밝혀 수출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지 분명히 함

- 미국은 지난 4년간 어떠한 국가와도 무역협정 체결하지 않았으나 2011년 10월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일괄 비준처리하여 수출증진을 위한 적극적 의지 표명했으며 세 국가와의 FTA 체결로 연간 130억 달러 수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美-中 간 무역불균형 사상최고치 기록하여 대중 통상압박 강화 예상

-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개방 확대는 필수적이나 2010년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가 2009년 1,960억 달러보다 감소한 1,830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0년 2,731억 달러로 2009년 2,269억 달러보다 20.4% 상승하여 美-中 간 무역불균형 해소가 미국의 대중무역정책의 핵심
- 대선을 앞두고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대중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대중 강경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
- 현재 美-中 간에는 위안화 환율문제, 저작권 침해, 중국의 자주적 혁신운동, 클린에너지, 희토류 등이 주요 통상이슈이며 단기적으로 당분간 무역분야 곳곳에서 美-中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산 냉장고

- 월풀사가 올해 3월 30일 동시에 요청한 상계관세에 대해서 미 상무부는 8월30일 이를 기각했으나 10월 30일 대우를 제외한 삼성과 LG 프렌치형 냉장고에 대한 덤핑혐의는 인정
- 금번 예비 덤핑판정으로 삼성과 엘지 냉장고의 미국 수출시 예비판정된 관세율이 적용되며 2012년 3월 14일 미 상무부의 덤핑관세 최종조사결과가 발표되고 2012년 4월 30일 미 무역위원회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으로 산업 피해 여부 최종 결과 발표 예정

○ 철강, 석유화학 제품

- 현재 수입규제 품목 중 철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철강산업이 값싼 수입제품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2011년 3분기까지 대미 수출이 전년보다 50%나 급등해 당분간 수입규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제품은 2011년 3분기까지 전년에 비해 61%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 현재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는 폴리염화비닐외에 향후 추가 규제가능성 존재

[브라질]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최근 수년 동안 헤알화 대비 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브라질 시장에는 수입제품이 물밑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를 이 같은 수입제품의 지나친 범람을 막기 위해 반덤핑 조치, 세이프 가드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올해 1월 ~ 9월까지 브라질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량의 수입제품이 브라질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분야로는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제화제품 등이 있으며 동 분야 제품들의 대부분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가 주로 적용하는 수입규제는 추가관세 부과이나 최근에는 라이선스 및 품질 인증을 요구하거나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예: 중국산 제품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으로 보내져 원산지가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를 통해서도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덤핑혐의로 조사를 받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소급적용하고 있음

- 과거에는 현행법상 덤핑 조사 시작 후 8개월이 넘어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는 조사 시작 후 4개월 차부터 비록 덤핑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시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가능함
- 동 조치는 임시 반덤핑 관세 적용이 확정된 제품에 향후 덤핑 혐의가 입증돼 본격적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적용 시점으로부터 최대 90일 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 브라질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덤핑 혐의로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라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추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덤핑 혐의 입증 시 높은 추가관세를 부담시킨다는 입장임. 한편, 브라질 정부는 덤핑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조사 기간도 최대 단축해 국내 업체들이 덤핑으로 입는 피해를 감소한다는 방침임

○ 브라질 정부는 지난 9월 메르코수르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공업세(IPI)를 12월 중순부터 3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함

- 동 조치 적용시기는 12월 중순 이후부터이며 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IPI가 7%에서 37%로 인상, 1000~2000cc 차량은 11~13%에서 41~43%로 인상 적용될 예정임
- 동 조치는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Big4(Fiat, Volkswagen, General Motors, Ford)에 매우 유리한 조치로, 동 업체들은 브라질 자동차 판매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브랜드는 아직까지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대자동차, JAC Motors, Chery 등과 같은 중국 저가 자동차 브랜드와 Audi, BMW 등 고가의 수입 자동차 브랜드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는 동 조치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동차수입업체협회(ABEIVA)는 “브라질 Big 4 업체들이 로비를 통해 브라질 정부를 움직여 경쟁업체 들제품을 대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행위로 일종의 수입규제 조치”라고 비난함

□ 통상정책 방향

- 브라질 정부는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장려 정책 및 BNDES(사회경제 개발은행), Proex(수출기금지원 프로그램), 수출보험 활용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APEX(브라질 무역투자진흥기관)의 역할을 확대시킨 바 있음
- 브라질 정부는 또한 “외국제품의 범람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 하에 수입증가에 대한 다수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최근 수년 동안 브라질 경제 호황, 달러 가치 하락 등 다수 요인으로 인해 중국 상품을 비롯한 외국제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무역수지 불균형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 룰라 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협력보다는 남남협력 및 대 중남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룰라의 뒤를 이어 브라질을 이끌어 나갈 지우마(Dilma)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남미대륙을 리더하고 있는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끊임없는 수입관세 인상 등 자국 무역보호 조치에도 비교적 대범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별다른 보복조치 등 맞대응을 좀처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12년에 수입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재 덤핑 혐의로 조사 중인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2월 기준, 브라질 정부는 25개국 54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30개의 품목은 중국 제품으

로 모두 반덤핑 조치를 받았음. 또한 반덤핑 조치 적용을 위해 조사 검토 중인 품목은 20개국 13개 품목으로 이중 중국은 총 5개 분야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 특별히 수출이 크게 증가해 수입규제 조치가 우려되고 있는 한국 상품으로는 철강제품(후판), 니트릴 고무제품 등으로 밝혀졌으며 동 제품들은 이미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2- 3년간 수출이 급증하여 브라질 현지 자동차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한동안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실제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한국산 자동차 수입과 관련 브라질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가하게 될지 주시해야함

○ 한편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수입규제의 경우, 중국 소재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브라질로 수출되는 제품에게도 적용될 뿐더러, 한국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국가 제품 수출에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브라질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

[아르헨티나]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1년 공식적으로 집계된 무역보호조치가 121개로 세계 최고로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 선정된 바도 있음

-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보다는 국내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나라로 현재 세계에서 비관세 장벽이 가장 높은 수준임
- 공식 조치 121개 이외에도 정식적인 공문을 통하지 않고 정부 관리의 구두 지시에 따른 비공식적인 조치들도 많아,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적용하고 있는 비관세조치는 더욱 많은 상황임

○ 현 정부의 2011.10.23일 대선 승리로 기존 수입규제 정책 기조 지속 예상

- 2011년에 시행된 주요수입규제로는 수입허가제 대상 품목 584개로 확대, “수입 1달러 = 수출 1달러” 정책을 내세우며 원칙을 대부분 완제품에 적용 등이 있음
- 그밖에도 석유 및 광물산업의 수출대금 국내 금융기관에서 100% 결제 의무화 등의 외환규제 조치, 통관 규제 등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수입관세 및 관련세 (한국 등 제3국 기준)			
구 분		요율	비 고
대외세(A)	관 세	※ HS 코드별	CIF 가격 x 관세율
	통계세	0.5%	CIF 가격 x 통계세율
대내세(B)	부가세	21.0%	(CIF + A) x 부가세율
	추가부가세	10.5%	(CIF + A) x 추가부가세율
	소득세	3.0%	(CIF + A) x 소득세율

주 : 1. MERCOSUR産(브라질 · 우루과이 · 파라과이) 무관세 적용

2. 통계세(0.5%)는 Mercosur産에 대해서는 면제

3. 부가세(21%), 추가 부가세(10.5%)는 사후에 신용(credit)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선납세’ 개념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함. 아르헨티나 중소 바이어와 상담시 부가세와 추가부가세, 소득세의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이어는 세금(비용)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수출자는 나중에 정산됨으로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임

□ 통상정책 방향

○ 강력한 수입규제로 인해 수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능력 한계로 인해 아르헨티나 시장에서의 수입 수요는 매우 높아서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2012년에는 더욱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며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현지에서 생산이 되는 완제품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대금 국내 금융기관에서 100% 결제 의무화 시행을 석유 및 광물산업 이외의 산업분야로 대폭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단위 : US\$백만, %)

시 기	수출				수				수지			
	2010	2011	증감 률 (당월)	증감 률 (누적)	2010	2011	증감 률 (당월)	증감 률 (누적)	2010	2011	증감 률 (당월)	증감 률 (누적)
1월	4,407	5,392	22	22	3,209	4,879	52	52	1,198	513	-57	-57
2월	3,958	5,407	37	29	3,455	4,799	39	45	503	608	21	-34
3월	4,679	6,305	35	31	4,403	5,638	28	38	276	667	142	-10
4월	6,206	6,953	12	25	4,101	5,653	38	38	2,105	1,300	-38	-24
5월	6,502	8,043	24	25	4,575	6,363	39	38	1,927	1,680	-13	-21
6월	6,366	7,922	24	25	5,057	6,904	37	38	1,309	1,019	-22	-21
7월	5,982	7,317	22	24	5,122	6,645	30	37	861	672	-22	-21
8월	6,370	8,255	30	25	5,329	7,616	43	38	1,041	640	-39	-23
9월	6,367	7,959	25	25	5,337	6,895	29	36	1,031	1,064	3	-20
10 월	5,888	7,528	28	25	4,951	6,306	27	35	937	1,222	30	-16
계	56,725	71,081	25	25	45,539	61,698	35	35	11,188	9,385	-16	-16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은 이러한 모든 불리한 역경을 극복하고 1997년 6억 4천 만달러가 그간 최고 수출액이었으나, 2010년에는 9억9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 수출액을 경신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져 최초로 10억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 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지와 판지', 재검토가 진행 중인 '냉연강판'은 이번이 없는 한 반덤핑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사례들에서 나타나듯이 동일품목의 현지기업이 조사신청만 한다면 신청기업이 독점기업이라고 하여도 수입FOB가격이 동기업의 현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쉽게 반덤핑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조사 결과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에어컨의 경우는 해당국들의 동제품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사례로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국내 생산 장려 정책에 따라 현지생산투자를 통한 수입규제 극복이나 완제품보다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계 및 중장비, 부품 등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이 유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우크라이나]

□ 수입규제 개요

- 2010년에는 추가수입관세와 같은 조치는 도입되지 않았음
 - 2009년에는 자동차, 냉장고 등 주요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도입했다가 교역상대국들의 반발과 WTO 규정 위반 가능성으로 6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음
 - 하지만 냉장고, 합금철, 비료, 유리 등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이중 냉장고, 합금철 등의 경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던 품목인 관계로 영향이 컸음
 - 특히 냉장고의 경우에는 우리의 대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가 공동으로 긴급수입제한 조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구제역 확산에 따라서 전통적인 수입규제 이외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은 구제역이 전염되기 쉬운 한국산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 대하여 2010년 12월 8일부터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이전에도 관련 제품들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실적이 전무하여 우리나라의 피해는 없음
 -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입규제 추세는 규제 종류를 과거 반덤핑 위주에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위주로 변하는 모습을 보임

□ 통상정책 방향

- 우크라이나는 2009년 -15.1%라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뒤 2010년 4% 내외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

락을 치고 아주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는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IMF의 재정적자 축소 요구가 2011년에는 GDP의 3.5% 수준으로 강화되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출 축소와 함께 재정수입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이런 차원에서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음
- 특히 2009년에 현지의 극심한 경기침체(경제성장률 -15.1%)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2008년도 수입했던 재고물량 처리에 부심하면서 대 우크라이나 수출이 76%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년도 재고물량 해소와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1~10월 기간 58% 증가했고 정보통신, 가전, 자동차, 합성고무 등은 1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예상됨
-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으로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통계청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1.8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10년에 수입이 급증한 품목은 냉장고(185%), 진공청소기(140%), 무선 전화기 (521%), 칼라TV(347%), 화학기계(512%), 합성고무(10,909%), 건설 중장비(809%), 화물자동차(1712%), 필름류(217%) 등이 있음
- 이중 냉장고는 이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임

[이집트]

□ 통상정책 방향

○ 2010/11 회계연도 경제성장 1.8% 그쳐, 2011/12 회계연도 2~3%대 성장 보일 듯

- 1월 25일 이집트 혁명 여파에 따라 이집트의 2010/1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1.8%에 그쳤음
- IMF에 따르면 이집트가 경제회복을 하는데 3~5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1/12 회계연도 성장률은 2%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 실적 및 전망>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은행 ¹⁾	4.7	5.2	1.0	3.5	5.0
IMF ²⁾	4.7	5.1	1.0	1.8~2.0(4.0)	없음(6.5)

1) 2011.6월 Global Economic Prospects

2) 2011.10월 World Economic Outlook, 괄호안은 2011.4월 전망치

○ 2010/11년 회계연도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및 이전수지 증가로 인해 2009/2010년 대비 적자폭이 대폭 감소(43.2억불 → 27.7억불)

- 수출은 13.1%(석유제품 18.3%)증가하여 270억불, 수입은 3.6% 증가(석유 15.1%)하여 508억불 기록, 무역수지적자는 238억불을 기록함

○ 정부의 2012년도 통상정책은 현재까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 내년 3월까지 의회를 구성하고, 6월 대선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정부 구성 시까지는 과도정부 하에서의 구체적인 통상정책이 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현재 하원 선거 진행, 치안 확보, 재정적자 심화 및 외환보유고 위험 수준 도달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단, 2012년 6월 대선을 통해 하반기까지 구성될 신정부가 수립되면, 개

방정책 기조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우디, UAE 등 주변 중동 산유국과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무바라크 정권 붕괴 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주변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고 있으며, GCC국가는 이집트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정치 및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교역 규모 역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특별히 수입규제 대상이 될 품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그러나, 철구조물(MTI 4단계 기준 6152)의 경우 현지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발주 등으로 인해 대한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약 28,400배 이상 증가하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 하지만, 이집트 수출 규모 확대를 위해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동 사업에 필요한 주요 부품 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감안, 수입규제 예상품목이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인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인도의 대한민국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재는 화학 및 석유화학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철강, 전자제품, 화학섬유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의 수입규제 유지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 건수는 2007년 8건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추이를 보였음. (2011년 중 석유화학제품 2건에 대한 중간재심판정

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추가 조사개시 및 진행 중인 사례 포함 시 전체적인 규제건수는 비슷)

- 이외에도 최근 들어 통신장비 수입규제(안보상 조사 통과 품목만 수입 허용), 철강생산기업으로 하여금 철강제품 판매를 위한 품질보증마크 획득 의무화, 태양광 패널 공급키 위해서는 인도 현지 제조공장 확보가 조건으로 태양광발전계획정책에 명시되는 등의 비관세수입장벽이 증가하는 추세임

□ 통상정책 방향

- 최근 유럽 및 미국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을 감소 등으로 인해, 2012년도 인도의 통상정책은 보다 자국산업 보호 방향으로 선회 전망
-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동시다발적 FTA 협상 진행이 되고 있는 바,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이 임박하는 등 추가 FTA 체결 성과 등이 가시화될 전망

□ 수입규제 예상품목

- 꾸준한 수입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제품은 계속적으로 인도 정책당국의 모니터링을 받을 전망으로 추가 수입규제를 받을 가능성 존재

[인도네시아]

□ 통상정책 방향

- 인도네시아 경제는 중산층 확산으로 인한 민간소비 지출 확대와 광물자원 등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 및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수년간 6%대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

- 무역수지도 수년간 2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했고, 주요 교역대상국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이며,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수출 비중은 미미한 수준

- 지역별 수출 비중('11년 상반기): 아시아(54.7%), 북미(10.0%), EU(3.1%)

-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중국, 한국과의 FTA 체결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취약한 제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각종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음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11년 12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가지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2~3개의 검역부두를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 약 7,000개의 품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표준규격(SNI)의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와 심사를 강화할 방침

□ 수입규제 예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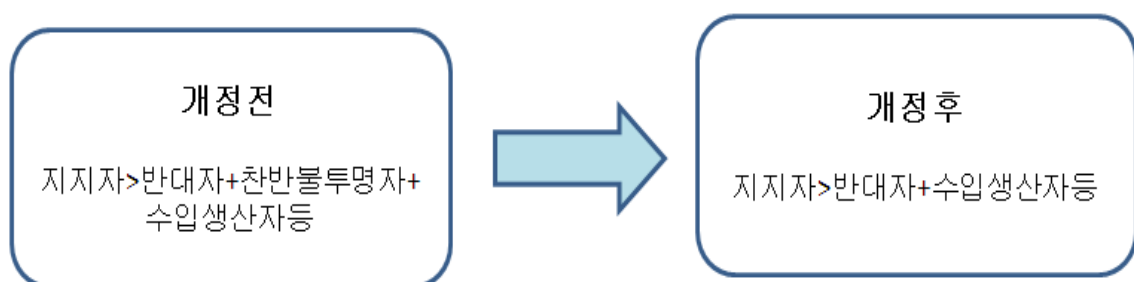
- 섬유, 전자 등의 협회에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국가표준규격(SNI)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정부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해당 품목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일본]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1년 4월 1일, 일본 재무성 및 경제산업성이 「부당염가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실시」

- 부당염가판매 관세 및 상계관세는 국내 생산자의 과세 요구(이하, 「신청」이라함)에 근거해 정부가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근거해 과세함
- 개정전의 제도에서는 조사 개시 요건(지지 상황)으로서 신청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본국 생산자의 생산량」이 「반대자」, 「찬반불투명자」 및 「수입 생산자등¹⁾」의 생산량 합계²⁾를 상회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규제와 동일하게 「찬반불투명자」를 지지 상황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 제도의 보다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본 국내 생산자가 부당염가판매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

□ 통상정책 방향

○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협정을 통한 개방정책 추진

- 2011년 11월 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노다 총리는 TPP에 교섭참가를 위해 관계국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함
- 현 시점에서 노다 총리 및 일본 정부는 TPP 참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교섭을 위해 정부 내에 대책팀을 만드는 등 체제를 강화할 방침을 보임
-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TPP 확대교섭에 참가한 9개국·작업부회에 관해서도 현지에서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등의 담당자를 파견해 정보 수집을 실시함

1) 수입생산자등: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를 가지는 생산자 및 조사대상화물 수입을 행한 생산자.
2) 계산은 각각의 생산량베이스.

- 일본이 11월에 참가 표명을 했던 것도 이미 참가 9개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참가조건을 둘러싼 교섭에 조금이라도 빨리 참가하고자하는 것이 목적임, 반면에 실제 일본이 교섭에 참가 가능한 시기는 2012년 봄 이후라는 견해가 대세임
- 일본정부 내각부는 일본이 TPP에 정식으로 참가했을 경우, 10년 후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을 0.54% 상승시키는 경제 효과(금액베이스로 약 2조7,000억엔)가 있다고 추산된 수치를 발표함
-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정부 여당 내에서도 참가 내용을 비롯, 참가 반대 및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음
- 쌀이나 축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 식품의 안전기준, 노동자의 대량 유입이나 건강보험에의 영향 등이 참가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적 주된 이유임. 따라서 참가 시비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인도 EPA가 2011년 8월 1일자로 발효

- 아시아 제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며 최근 현저한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인도와 무역 자유화·원활화, 투자 촉진, 관련분야의 제도정비를 도모하는 것으로, 양국 간 교역 확대가 예상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맥주 등 주류에 대한 주의 필요

- 최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제3의 맥주(성분에 따른 맥주의 한 종류)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의 이온 사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자체 기획상품(PB제품)로 한국산 맥주를 수입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으며 하이트진로 사는 자체 브랜드로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할 계획에 있어 이러한 한국산의 흥행 기세는 쉽사리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막걸리 등의 한국 주류의 일본 국내 수요도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기존에 존재하던 일본 주류회사들은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일본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 책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최근 심각해지는 엔고현상으로 한국산의 경쟁력이 더욱 강해져 일본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이 침식당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우려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제3의 맥주에 대한 증세 추진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중국]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신규규제보다 규제 연장에 무게

- 중국이 2009년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은 1건(TPA)이나 같은 기간 일몰재심과 관세부과기간 연장은 각각 6건과 8건을 기록

○ 기초·핵심 산업 자국기업 보호정책 실시

- 중국 국영기업들은 용자, 토지임대료 할인, 정부구매 조달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누림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항공, 선박, 자동차, 발전설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장비의 80%를 국산화할 계획
- 현재 수정중인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안)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주요 부품기업의 외국자본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

□ 통상정책 방향

-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한편, FTA 등 지역간 자유무역협정(RTA) 체결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WTO 회원국(엘살바도르, 일부 EU 회원국 제외)에 최혜국대우 지위를 부여하고, 41개 최빈국(LDCs)에 무역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를 제공
- 칠레, 뉴질랜드, 아세안(ASEAN)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호주, 걸프협력회의(GCC) 등 다수 국가와 FTA 추진 중

○ 내수시장 확대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고급제품, 첨단기술 등 분야의 수입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 현재 중국 정부의 대외무역정책 기조는 '수출안정, 수입확대, 무역흑자 감소'임
- 중국 정부는 올해 '수입장려기술·제품목록'을 발표, 에너지절약, IT, 신소재 등 분야를 신규로 추가함
- 2011년에만 정보기술제품, 애니메이션 생산 관련 제품, 원자재 등 다수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하되었고, 사치품 등의 수입관세 인하가 논의되고 있음

○ 기존 수출업계에 대한 지원조치는 유지 또는 확대될 전망이다

- 중국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기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소형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미형기업'을 따로 분류해 중소기업 육성책의 수혜범위를 확대함
- 필요시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직, 간접 자금 지원을 늘리고 무역대금 결제, 융자 등 은행의 무역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자동차, 가전 등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산 관련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품목 가격 조절에 유의해야 함
-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상존하는 품목으로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됨

[캐나다]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1년 한 해 동안 캐나다 관세청이 수행한 규제 및 덤핑 조사 전체 건수중 절반이상이 중국산 철강(Steel) 제품과 관련된 사항이며, 그 외 나머지 건수마저도 자전거(대만, 중국), 알루미늄(중국), 가스/석유 시추용 드릴(중국) 등이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규제 및 덤핑 조사결과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등 중국에 불리한 판정이 대부분임
- 반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08년 12월 이후로 구조용 강관과 동제 관연결구에 대한 재조사 및 일몰재심 외에는 특이 변동사항 없음

□ 통상정책 방향

- 2011년 11월 25일 캐나다 재정부 장관 짐 플래허티(Jim Flaherty)는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 절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해 연 3,200만 달러에 달하는 70여개 제조업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2년 1월 1일부로 철폐할 계획을 발표 (철폐되는 70여개 품목: 가구, 의류, 금속, 펄프 제지, 의약, 식품가공설비, 수송설비 등)
- 한편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제조업 관련 관세를 모두 철폐하여 캐나다 제조업계를 무관세 지대로 만들 계획이며, 세부 품목은 추후 발표 예정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2011년 9월 캐나다 산업부 누계 기준으로 캐나다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하였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3.5% 증가
- HS Code 6단위 기준, 상위 25개 수입품목 중 평균 13.5%를 뛰어넘는

품목중 아래 12개 품목들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인 바, 수입
급증에 따른 수입규제 대비 요망

<對캐나다 수출 급증 품목>

(단위 : \$US 천, %)

품목	HS CODE	2010년 1월-9월	2011년 1월-9월	증가율
정화/ 정제 기기	842129	62	218,812	350,695
역청기반 정제유	271019	146,870	216,179	47.2
메모리	854232	43,679	135,166	209.5
은제(銀製) 반가공품	710692	3	83,879	2,731,222
승용차 고무타이어	401110	51,409	74,139	44.2
기타 집적회로	854239	42,788	64,860	51.6
차량부품	870899	40,696	63,796	56.8
굴삭기	842952	24,335	51,160	110
합성고무제품	400219	24,744	38,544	55.8
밸브	848180	26,153	38,465	47.1
기타 트랙터	870190	21,230	29,052	36.9
대형차량용 고무타이어	401120	23,243	31,889	37.2

출처 : 캐나다 산업청

[터키]

□ 통상정책 방향

○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 경제가 고속 성장을 계속하면서, 무역수지적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경상수지적자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

- 2011년 1월~10월의 터키 수출은 111,398(백만 불), 수입은 201,581(백만 불)을 기록하여, 90,183(백만 불)의 사상 최대 무역수지적자임
- 그러나 이는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터키의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 원부자재 및 설비 수입이 증가하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이들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 한국의 對 터키 수출은 터키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소재 및 기계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일부 섬유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최근의 유럽 글로벌 금융, 재정 위기의 추이에 따라 유럽 의존도가 높은 터키 수출이 크게 감소세를 보이고, 무역수지적자가 계속 누적될 경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터키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터 FTA가 2012년에 타결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적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터키 정부의 정책 동향을 볼 때, 2012년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 별도의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은 많이 낮으나, 아래 예시 품목은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수송기계(HS 8704): '11년 10월 대 터키 수출 전년 대비 159.17% 증가
 - 불도저, 그레이드(HS 8429) : '11년 10월 현재 대 터키 수출 전년대비 139.42% 증가
 - 트랙터(HS 8701) : '11년 10월 현재 대 터키 수출 전년대비 246.48% 증가

[파키스탄]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비 필수품에 대한 수입규제 기조 계속
 -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투자유출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8년부터 987개 비 필수품, 사치품에 대한 규제관세 신설 등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종료 후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2008년부터 부과되던 987개 비필수품에 대한 규제관세는 최소 15%~50% 부과가 계속 되고 있음

○ 언더벨류에 대한 감시 강화

- 파키스탄 세관에서는 기존의 극심한 수입신고가격 언더벨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의 사후 가격심사를 통해 언더벨류로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후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특정 물품과 특정 지역별로 기준 수입가격을 정해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 사례로 2011년 폴리올과 폴리우레탄에 대한 세관의 전반적인 언더벨류 조사 후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파키스탄 수입업자에게 추가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졌음
- 또한 세관은 이러한 품목에 대한 표준가격을 정하고 한국산을 유럽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려 해 무역관에서 적극 이의제기를 하여 평가 가격의 소속군을 기타 아시아 국가로 변경토록 하였음. (중국산, 아시아산, 유럽산, 기타국산 순으로 높은 가격 책정, 초기에 한국산 제품이 기타국산에 포함)
- 한편, 폴리우레탄의 경우 일부 다국적기업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부과 시 기준가격 적용을 면제기로 파키스탄 세관에서 결정 고시함에 따라 KOTRA 카라치 무역관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한국산 제품의 수입업자들과 무역관의 요청 시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기로 함
- 이러한 세관의 수입신고가격 언더벨류에 대한 조사와 제제 조치 시행 시 그 대상이 파키스탄 수입업자가 되므로 국내 수출업자나 무역관의 적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세관의 처분 결과 또한 일부 수입업자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업계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 통상정책 방향

○ 높은 관세율 및 중국 등 주변국과의 FTA로 인한 국산제품 경쟁력 약화

- 수입 시 일반 세율(관세 및 일반관매세 등 포함) 50% 내외가 일반적
- Pak-China FTA, 2007년 체결 후 2012년 까지 관세율 0~5%로 인하완료

- 기타 스리랑카('05), 말레이시아('07), 이란('07) 등 주변국과 무역협정
- 파키스탄이 치열한 가격시장임을 감안할 때 한국산의 입지 약화 우려

○ 연료류 수입액이 무역수지 불균형의 주요 원인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산업전반의 수입의존도가 커 무역수지 개선이 어려운 상황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체 수입액의 36% 내외는 석유류 등 연료류가 차지하고 있고, 화학 및 화학공업 생산품이 12%, 기계류가 10.6%, 섬유 산업 제품 및 섬유원재료가 7%, 철강 등 비금속 및 제품이 5.7%, 플라스틱 및 고무와 제품이 4.9%, 자동차 및 부품이 4.6%을 차지하고 있음

○ 대 중국 무역수지 불균형 급증으로 감시 강화 예상

- 2009/10 회계연도 10억불 내외이던 대중 무역적자가 2010/11 회계연도 들어 40억불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불균형이 크게 증가함
- 특히 파키스탄은 극심한 가격시장일 뿐만 아니라 2012년 까지 중국-파키스탄 FTA 로 관세율이 0~5%까지 인하가 완료됨에 따라 이러한 무역수지 불균형은 확대 될 여지가 큼
- UAE, 사우디, 쿠웨이트 등은 연료류 수입액이 많아 발생하는 수지 불균형

<2010/11 회계연도 파키스탄의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현황>

(단위 : US\$ 백만)

국가	수입(USD)	수출(USD)	무역수지
중국	5,758.11	1,625.77	-4,132.35
UAE	5,461.42	1,798.91	-3,662.51
사우디	4,523.04	425.22	-4,097.82
쿠웨이트	3,313.03	92.32	-3,220.71
말레이시아	2,446.20	154.62	-2,291.58
미국	1,799.95	3,936.29	2,136.34
인도	1,734.11	262.97	-1,471.14
일본	1,654.32	160.01	-1,494.31
독일	933.56	1,265.32	331.76
태국	838.56	83.84	-754.72
인도네시아	799.95	126.40	-673.55
한국	710.45	371.52	-338.94

자료원 : 파키스탄 통계청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파키스탄 국내 업계의 수입규제 요청 품목

- 파키스탄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에 문의 결과 기존 진행되고 있는 반덤핑 조사건 외에는 파키스탄의 업종별 단체나 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수입규제 요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Polyester Staple Fiber 덤프방지관세 부과 일몰제 적용 검토 예정

- 2007년 2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산에 부과가 결정된 Polyester Staple Fiber 에 대한 덤프방지관세는 부과 후 5년이 경과하면 일몰제 적용으로 부과가 종료되어야 함
- 그러나 관련 파키스탄 국내업계에서 부과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일몰제 적용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며, 이러한 파키스탄 국내업계의 연장검토 요청 기한은 2011년 12월 20일 까지임
- 기한 내 업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덤프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나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여타 덤프방지관세의 사례를 보면 파키스탄 국내업계의 연장검토 요청을 통한 부과 연장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임

[필리핀]

□ 최근 수입 규제 동향

- 필리핀은 아세안의 주요국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나 취약부문인 농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화학제품과 자동차, 오토바이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도 30%-6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특히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음
- 6개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 (MAV) 정책에 의거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옥수수, 설탕, 돼지고기, 가금류, 커피, 커피추출물 등이며 관세율도 20~25%에 이르고 있음
- 2016년 1월까지 유효한 동 고율 관세에 대해 필리핀 관세청은 관세인하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임

□ 통상정책 방향

- 필리핀은 아세안(ASEAN)의 일원으로 기본적인 통상정책 방향은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NEGATIVE LIST를 운영하고 있음
- 필리핀은 아세안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일본과는 경제협정(JPEPA)을 체결하였으며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수입규제 예외품목

- 수입규제 예외품목은 없음
-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서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필리핀은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VDP(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을 마련하고 있음

-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무과세 혹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완성차 및 오토바이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2011년 말 현재 필리핀은 승용차 30%, 화물차(15-20인승)는 15-20%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완성차 수출업체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불리한 사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호주]

□ 통상정책 방향

- 호주 정부는 WTO DDA협상을 사실상 실패로 보고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 협상노력을 증대
 - 현재 한국을 포함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FTA협상 진행 중
 - 태국,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과 FTA 체결 완료
- 경쟁력 취약, 이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지재권을 강화
 - 2010년부터 자동차 관세율 5%로 인하(기존 10%)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입 장벽 완화 중
- 수입규제 수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
 - 최근 수년간 수입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호주 제조업 경쟁력 취약, 호주화 강세로 인한 수입 수요 급증, 주로 에너지 품목 수입으로부터 기인한 무역적자 등을 감안할 때 수입규제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호주는 계속해서 기존 주요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의 대한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있어 특별히 규제가 우려되는 품목은 없으나 제소 자체는 개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상시 모니터링 필요

[EU]

□ 통상정책 방향

○ EU 공통관세 (Common Customs Tariff) 공표

- 집행위원회는 관례대로 10월말에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EU 공통관세 (Common Customs Tariff)를 공표하였음
- EU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2012년 공통관세에서 제품 분류코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적용범위(구성물질의 함량, 무게, 제품정의 등)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이 요망됨

- 주요 변경 품목군은 다음과 같음

- 농수산물 : 97개 사항 변화
- 화학제품 : 27개 사항 변화
- 제지 : 9개 사항 변화
- 섬유 : 14개 사항 변화
- 철강 : 5개 사항 변화
- 전기 제품 : 30개 사항 변화 등

- 특히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EU는 매년 제품의 HS분류와 관세를 검토하며 제 3국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동 품목에 변화 중에는 성분 함량에 관한 변화가 대부분 이므로 EU 수출 시 우리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도입 지속 가능성

-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관련 논의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내년에 다시 현안 문제로 부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

- 철강제품 관련 신규 조사건수가 4건이었던 2010년에 대비해 2011년에는 7건으로 증가된 것을 비추어 볼 때 2012년에도 역외 철강 수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 예상됨

○ 화학제품

- REACH 규정의 목적은 자연환경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화학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제한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수출업체에게는 수출 제재 요인이 될 수 있음

[첨 부]

<국가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11.12 현재)

국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상계관세	계
남아공	3	0	0	3
러시아	1	2(3)	0	3(3)
말레이시아	1	0	0	1
멕시코	1	0	0	1
미국	8(1)	0	3(1)	11(2)
브라질	2(3)	0	0	2(3)
아르헨티나	2	0	0	2
우크라이나	1	2(1)	0	3(1)
유럽연합	3	0	0	3
이집트	1	0	0	1
인도	20(1)	1(2)	0	21(3)
인도네시아	1(1)	3	0	4(1)
일본	1	0	0	1
중국	17	0	0	17
캐나다	2	0	0	2
태국	2(3)	0	0	2(3)
터키	4	7(1)	0	11(1)
파키스탄	5(2)	0	0	5(2)
필리핀	0	3	0	3
호주	1(1)	0	0	1(1)
총 20개국	76(12)	18(7)	3(1)	97(20)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품목별 대한 수입 규제 현황>

(2011.12 현재)

국가	철강금속	화학	섬유	기타	계
남아공	1	1	0	1	3
러시아	2(3)	0	1	0	3(3)
말레이시아	0	0	0	1	1
멕시코	0	0	1	0	1
미국	8	1	1	1(2)	11(2)
브라질	(2)	2(1)	0	0	2(3)
아르헨티나	2	0	0	0	2
우크라이나	1	0	1	1(1)	3(1)
EU	2	1	0	0	3
이집트	0	1	0	0	1
인도	2	13(3)	4	2	21(3)
인도네시아	2(1)	0	1	1	4(1)
일본	0	0	1	0	1
중국	0	14	1	2	17
캐나다	2	0	0	0	2
태국	2(2)	0	0	(1)	2(3)
터키	0	1	5(1)	5	11(1)
파키스탄	0	3(1)	2	(1)	5(2)
필리핀	0	0	0	3	3
호주	(1)	0	0	1	1(1)
총 20개국	24(9)	37(5)	18(1)	18(5)	97(20)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국가별 규제 세부품목>

(2011.12 현재)

국가	규제품목	계
남아공	연산로프, 케이블, PET수지용기, 백상지	3
러시아	니켈함유 테인레스 평판압연, 스테인레스 강관, 잠금장치 및 부속구(조사중), 스테인레스 식기류(조사중), 유리섬유, 스테인레스관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조사중)	3(3)
말레이시아	신문용지	1
멕시코	폴리에스터 단섬유사(로우멜티드 제외)	1
미국	스탠다드 강관,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철강판재류,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냉연강관 코일, 철강후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폴리염화비닐, PC강선, 연벽사각파이프,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냉장고(조사 중), 유압식 변압기(조사 중)	11(2)
브라질	PVC,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품, 강판(조사 중), 니트릴 고무(조사중), 도금 강판(조사 중)	2(3)
아르헨티나	냉연강관, 아연강관	2
우크라이나	철강파이프, 성냥, 파일편물, 승용차(1)	3(1)
EU	철강제관연결구류, PET칩, 철선로프	5
이집트	DOP (Diocetyl Phthalte)	1
인도	폴리에스테르장섬유의 기타단사, PVC 서스펜션, 오프셋복사용 알루미늄판, 아크릴섬유,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가성소다, 페놀, 아세톤, 과산화수소, 석유화학첨가제류, CDR, 스테인레스 냉연강, 인산, 차아황산소다, 탄산칼륨, 유성판재폴리올, 나일론필라멘트사, TV 음극선관, 스티리엔부타디엔고무, 스테인레스 냉연강, 고무노화 방지제, 무수프탈산(조사 중, 반덤핑), 무수프탈산(조사 중, 셰이프가드), Carbon Black(조사 중)	21(3)
인도네시아	열연코일, 기타철강제연선 로프 및 케이블, 면직물, 방수천·차양, 냉연강판(조사 중),	4(1)
일본	폴리에스테르단섬유	1
중국	이염화메탄, 아트지(동판지), 무수프탈산(PA), 합성고무(SBR), 폴리염화비닐(PVC), TDI, 페놀, 클로로포름, 광섬유,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ECHEpichlorohydrin, 폴리우레탄, 비스페놀A(BPA), 아세톤, 유기실리콘중간체, 아디프산, TPA	17
캐나다	구조용 강관, 동제관연결구	2
태국	스테인리스냉연강판, 열연철강 및 열연코일, 코팅지(조사 중), 도색아연도금강판(조사 중), 아연도금강판(조사 중)	2(3)
터키	폴리에스테르장섬유직물, 금속드리사,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폴리에스테르 직조섬유사, 모터싸이클, 안경테, 여행용구헨드백기타유사제품, 전기제품류, 진공청소기, 섬유직물, PET, 면사(조사 중)	11(1)
파키스탄	염화비닐수지,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사, 폴리에스테르원면, 무수프탈산, 평면코팅판지(조사 중), 과산화수소, 포름산(조사 중)	5(2)
필리핀	Ceramic Tile, 판지(Testliner Board), Float Glass	3
호주	백상지, 구조물용철강파이프(1)	1(1)
총 20개국		97(20)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작성자

◆ 통상조사팀	유성준 과장
◆ 키예프무역관	김하민 과장
◆ 팔라룸푸르무역관	박건원 과장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차장
◆ 상파울루무역관	이정상 과장
◆ 방콕무역관	박영선 차장
◆ 자카르타무역관	이장희 차장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형 차장
◆ 모스크바무역관	김동묘 과장
◆ 카라치무역관	김한승 과장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과장
◆ 토론토무역관	손호성 과장
◆ 도쿄무역관	최정락 과장
◆ 뉴델리무역관	차성욱 과장
◆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과장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성희 과장
◆ 시드니무역관	이희연 과장
◆ 카이로무역관	김효근 과장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과장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대리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김남희 대리

Global Issue Report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2 전망

발행인	오영호
발행처	KOTRA
발행일	2011년 1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